

2015

주요국 식품수입제도 모니터링

Food Import Regulation Monitoring
of Overseas Countries

| 일본 |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I 일본

제1장 통관제도	3
제1절 통관제도 일반	3
제2절 수입통관 절차	3
제3절 수입신고 관련제도	6
제2장 검역제도	9
제1절 검역제도 일반	9
제2절 동·식물, 식품 등 검역	10
제3절 품목별 검역 유의사항	25
제3장 관세제도	39
제4장 라벨링제도	41
제1절 식품표시법 일원화	41
제2절 품질 표시기준	42
제3절 알레르기 표시	47
제4절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49
제5절 GMO(유전자 변형식품 표시제도)	51
제6절 식품첨가물	54
제7절 보건기능식품	56
제5장 통관보류, 역류등 부적합 사례	65
제6장 수출현안	71



주요국 변경사항 요약

I 일본

□ 라벨링

- 식품위생법, JAS법, 건강증진법의 통합식품표시법이 신설된 소비자청으로 이관되어 2015년 4월부터 법률 시행됨
- 수입식품의 경우 기존에 표시하던 사항은 모두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추가로 영양성분표시가 의무화 되는데 가공식품의 경우 5년간, 신선식품에 대해서는 1년 6개월로 유예기간 부여

□ 식품위생법 시행규행 규칙 일부 개정

- 첨가물 암모니움 이소바레레이트(Ammonium isovalerate) 추가 등록
 - 일본 식품위생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암모니움 이소바레레이트를 새로운 착향 첨가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첨가물 리스트에 추가함
- 청량음료수에 대한 보존기준 변경
 - 미네랄워터, 냉동과실음료 및 원료용 과즙 이외의 청량음료수중 10℃이하에서 보존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종래 보존기준 대상에서 제외. 제조기술 발달로 인해 충분한 제균이 가능해짐으로서 과거 10℃이하에서 보존 유통해야 하는 규정을 삭제

□ 식물 검역제도

- 2015.6.1자 한국내 배나무 화상병 발생으로 배, 사과 등 한국산 해당 과실류 수입금지 조치



2015 주요국 식품수입제도 모니터링

일본

Food Import Regulation Monitoring of Overseas Countries

제1장 통관제도

제2장 검역제도

제3장 관세제도

제4장 라벨링제도

제5장 통관보류, 역류 등 부적합사례

제6장 수출현안

제1장 통관제도

제1절 통관제도 일반

- 화물을 수입 또는 수출 하는 자가 세관관서에 화물의 품명, 종류, 수량, 가격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은 후, 수입의 경우에는 관세와 같은 필요한 세금을 납부하고 세관으로부터 수출입 허가를 받는 절차를 말함
- 이 허가를 받지 않으면 수출입이 완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수출의 경우 내국화물에서 외국화물로 변환되지 않아 선적을 할 수 없게 됨. 또한 수입의 경우 외국화물에서 내국화물로 변환되지 않으며 보세 지역으로부터 국내 인수가 불가능.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이 절차를 게을리 하거나 허위 수출입신고한 경우) 수출입을 한 경우는 밀수에 해당함
- 수출입 신고는 수출입을 하려고 하는 자 (개인 혹은 기업 및 단체) 가 할 수 있음. 그러나 수출입신고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법률 등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므로 보통 업자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고 수출입신고와 같은 통관 업무를 의탁하는 경우가 다수. 세관으로의 수출입 신고 시, 통관서류 심사를 하고 서류에 기명날인 하는 행위는 통관업자에 소속되는 통관사 만이 할 수 있음

제2절 수입통관 절차

- 외국에서 도착한 화물을 국내에 인수(수입) 하기 위해서는 수입자가 그 화물을 보세지역에 반입한 후에 그 보세지역을 관할하는 세관관서에 수입신고를 하고 화물에 대한 필요한 심사, 검사를 거쳐 관세, 내국 소비세 등을 납부하고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됨

□ 수입신고 절차

- 수입하려고 하는 화물의 품명, 수량, 가격 등을 기재한 소정의 양식의 [수입신고서]가 필요하며, 화물의 종류에 따라 법령 규정에 의해 필요한 서류 (수입허가, 승인서, 특혜관세의 적용을 받으려고 할 경우 [특혜원산지 증명서], 감면세의 적용을 받으려고 할 경우는, [감면세 명세서] 그 밖의 다른 것에 해당되면 그에 관한 것들을 첨부 하여 세관관서에 제출하면 됨
 - ① 매입서(invoice) 또는 그것에 해당되는 서류
 - ② 선하증권(항공편의 경우 항공 화물 수송증)
 - ③ 보험료명세서
 - ④ 운임 명세서
 - ⑤ 포장 명세서

□ 통관 필요서류

- 통관 업체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① 매입서 (Invoice, 송장, 상업 송장)
 - ② 포장 명세서 (Packing list, 패키징리스트, 포장 명세서)
 - ③ 선적 지시서 (Shipping Instructions, S / I, 해운·지침, 선적 의뢰서)
 - ④ 위임장

① 매입서

일반적으로 인보이스라고 하며, 이 서류는 수출 신고시 필수 제출은 아니지만, 수출 허가의 판단을 위해 세관에서 청구 할 경우 제출해야 함. 세관에 제출하는 매입서는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함.

- a. 수출국 (수출자) 가 수입국의 수취인 (수입자)에게 화물의 발송을 알리기 위해 작성된 서류
- b. 화물의 품명, 종류, 수량, 가격, 대금 지불 방법, 발송 및 수취인의 주소, 거

처, 성명, 명칭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② 포장 명세서

일반적으로 패키징리스트 라고 하며, 매입서를 보완하는 서류임. 수출화물의 수량, 포장 후 중량 등이 기재되며, 가격 및 결제 정보는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음
세관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작성하는 것이 좋음. 혼재화물로 수출 할 경우 통관 업체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매입서와 포장 명세서는 하나의 서류로 겸용 할 수 있음

③ 선적 지시서

일반적으로 선적 의뢰서라고 하며, 통관업자가 선하증권 (Bill of Lading : B / L), 항공 운송장 (Air Waybill : AWB) 및 AWB를 작성하기위한 정보로 기재해야 할 내용을 지정함. 관세사가 서식을 지정할 수 있음
통관업자의 지시를 철저히 하고, 서류 작성의 실수를 방지 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 함

④ 위임장

통관업자와 처음 거래를 할 때 준비 할 서류로, 통관업자는 통관 업무시 장부를 마련하여 일정 기간 동안 보관 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음. 보관 의무가 있는 서류 중 하나에 “의뢰자로부터 의뢰를 받은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데 (통관법 제 22조 제 1항, 통관법 시행령 제 8조 제 2항) 통관업자는 임의 서식으로 고객 (수출입 통관을 의뢰 한 위탁자)에게서 “위임장”을 받음

제3절 수입신고 관련 제도

□ 통관 절차 중 수출입의 신속화·간편화 등의 편의를 위한 제도

○ 특례 수입 신고제도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수입자가 지속적으로 수입하고 있다고 지정 받은 화물에 대해서는 법령 준수 (컴플라이언스)의 확보를 조건으로 수입 신고와 납세 신고를 분리함 먼저 화물 수령 신고를 하고 그 후 납세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 간이 신고로, 신고 내용이 줄어들어 서류 자동화도 도모할 수 있음 (수입화물 인수의 신속화를 도모하기 위해)

○ 예비 심사제

수입화물이 일본에 도착하기 전에 「예비 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하여 사전에 세관 서류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 수입화물이 보세 지역에 반입 된 후 본 신고 (수입 신고)의 의사 표시를 하면 즉시 허용됨. 신선 식료품과 저스트 인 타임으로 납기가 까다로운 상품, 특정 계절이나 이벤트 (크리스마스 등)를 위한 상품 등 국내 반입을 서두르는 제품에 많이 쓰임 (수입화물 인수의 신속화를 도모하기 위해)

○ 화물 도착 즉시 수입 허가제도

수입 시 예비 신고가 있었던 화물 중 국내 인수를 서두르는 화물의 경우 세관 서류 심사 결과 “검사 불필요”라고 표시된 화물은 화물 도착이 확인 되는대로 본 신고 (수입 신고)를 실시하면 보세 지역에 반입하지 않고 즉시 수입 허가가 이루어지는 제도임 (수입화물 인수의 신속화를 도모)

□ 수출입 항만 관련 정보 처리 시스템 (Nippon Automated Cargo and Port Consolidated System : NACCS)

- 현재 일본 대부분의 통관업자는 NACCS를 사용하여 시스템상의 통관을 진행하며, 통관업자가 NACCS를 통해 신고를 하고, “구분 1 : 허용” 이라고 처리 된 경우 세



관에 제출해야할 문서를 크게 줄일 수 있음. 또한 2013년 10월부터는 PDF 등의 전자 매체로 제출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세관 통관 업체에 조회가 가능함

□ 필요 서류의 법적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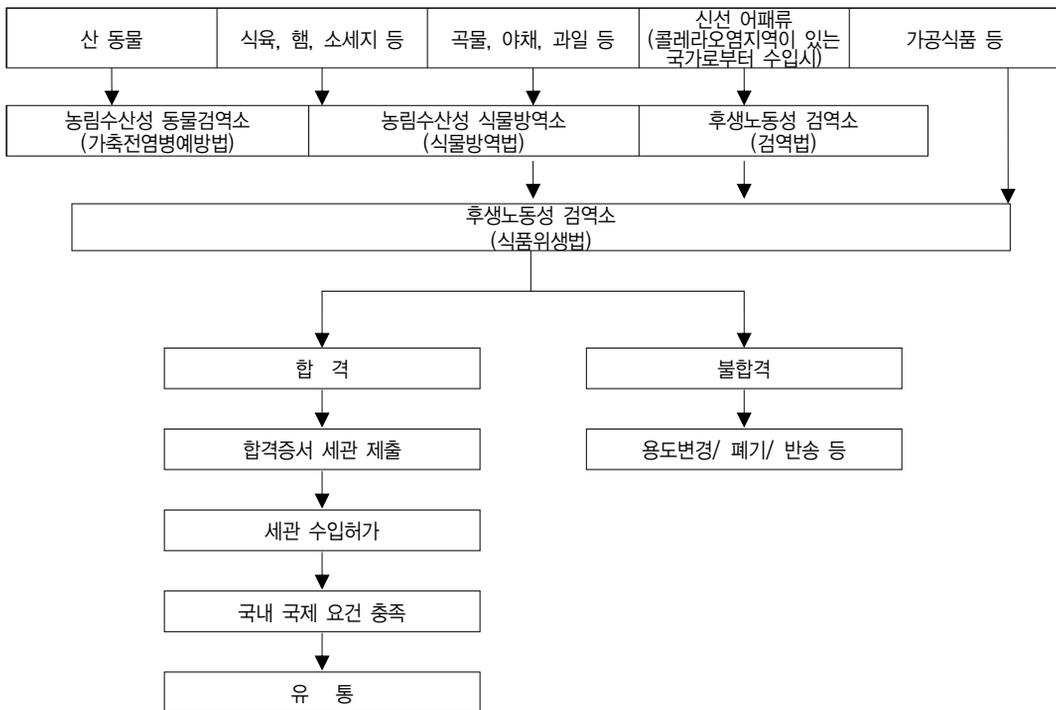
- 기존 수출 통관 서류는 매입서(인보이스)로 의무화 했으며, 2012년 10월 1일에 개정 된 관세법에서 “계약서, 매입서 기타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또는 혜택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 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필요한 경우 제출을 요구하고 있음 (관세법 제 68 조) 그러나 실무상 현재도 계속 통관업자에게 통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위의 일련의 서류를 제출하기도 함.

제2장 검역제도

제1절 검역제도 일반

- 사람 및 가축의 생명 또는 건강과 관련된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어떤 국가를 막론하고 가장 엄격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동물은 가축전염예방법, 광견병 및 수산자원보호법, 식물은 식물방역법에 의한 검역을 받아야 하고, 또한 동식물 중에서 식품으로 사용되는 것은 동식물 검역을 받은 후 다시 식품위생법에 의한 검사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 동·식품 또는 식품은 첫 번째 수입시 매우 엄중한 검사가 이루어지므로 소요기간을 충분히 잡아야 하고, 전염병이 발생한 국가로부터는 아예 수입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관계 당국에 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동·식물, 식품 등 검역 절차 개요도]



제2절 동·식물, 식품 등 검역

1. 동물검역

□ 가축전염병예방법

- 가축전염병예방법(家畜伝染病予防法)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의 국내 침입 및蔓延 방지를 위하여 수입물품 중 검역을 받아야 할 물품(지정검역물)을 지정하고 있다. 이들 물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농림수산성 동물검역소의 검사를 받아 수입 검역증을 취득하거나 농림수산성 대신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또한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지역으로부터의 전염병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금지 지역과 수입금지품목을 지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지정검역물에 관한 절차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 대상물품

〈 가축전염병 예방법 지정검역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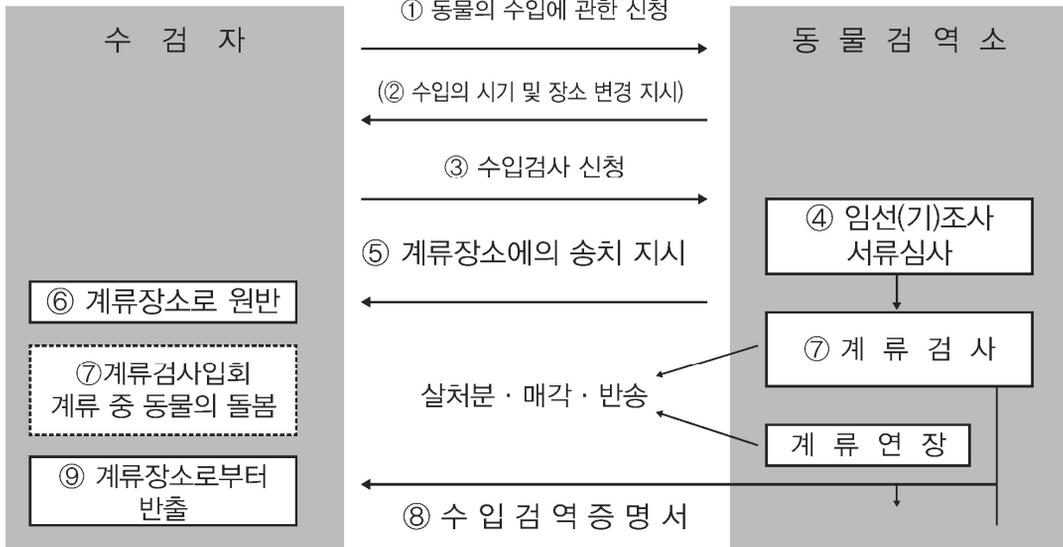
1. 다음의 동물 및 그 사체
 -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偶蹄類) 동물 및 말
 - 닭, 메추라기, 꿩, 타조, 색시닭, 칠면조, 오리, 거위, 기타 오리류
 - 개, 토끼, 꿀벌
2. 알 (닭, 메추라기, 꿩, 타조, 색시닭, 칠면조, 오리류의 것)
3. 위 1. 동물의 뼈, 고기, 지방, 혈액, 피부, 머리, 날개, 뿔, 발굽, 힘줄 및 장기
4. 위 1. 동물의 우유, 정액, 수정란, 미수정란, 분뇨
5. 위 1. 동물의 뼈가루, 고기가루, 혈분, 피부가루, 날개가루, 발굽가루 및 내장 가루
6. 위 3.을 원료로 하는 소시지, 햄, 베이컨
7. 수입 허용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사료용 질 또는 건초
8.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 시험연구용 등으로 농림수산성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하는 물품

- 이들 물품은 일반화물, 휴대품, 국제우편물 등의 운송 형태, 양의 다소, 용도(기념품, 자가 소비 여부 등)에 관계없이 모두 검역을 받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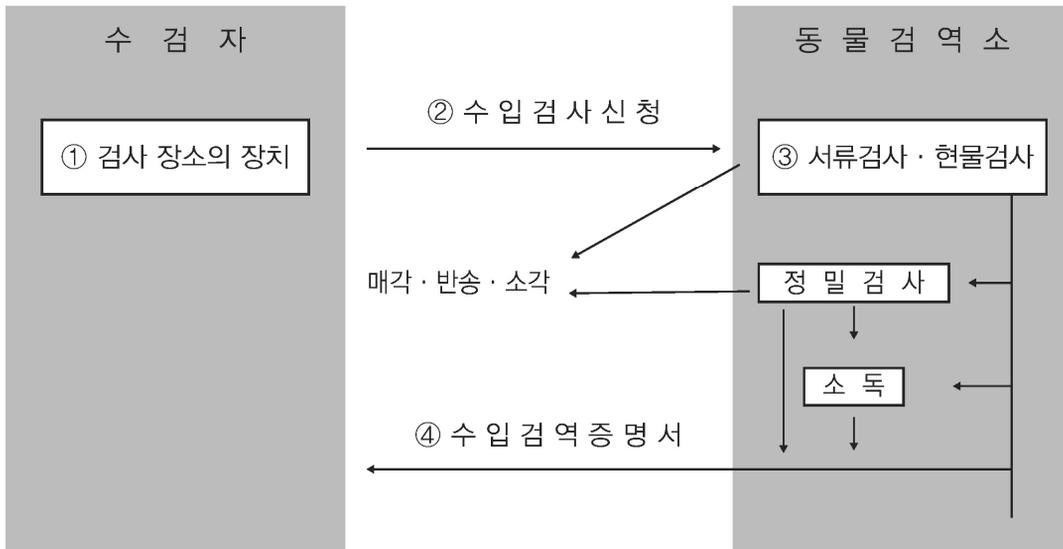
□ 검역절차

- 동물검역 신청은 ‘수입검사 신청서’ 1통에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사증명서(Health Certification)를 첨부하여 동물검역소에 제출한다.
- 동식물의 검역은 원칙적으로 이중 검역제로서 출발국의 검역증명서가 없는 경우는 도착국에서 검역을 받는다. 따라서 반드시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급하는 검사증명서를 취득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 이들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동물검역소 검사 결과에 따라 교부받은 수입 검역 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검사에 합격 또는 허가 등을 받았다는 확인을 받은 후 통관할 수 있다.
- 세관은 우편물 또는 휴대품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검사 합격 여부를 동물검역소가 수입물품의 용기나 포장에 날인한 「검역필」 도장을 보고 확인한다.
- 동물, 육류 등은 수입이 금지 또는 정지되는 경우가 많으며, 검역대상물품별로 위생조건이 정해져 있다. 또한 지정검역물이 아니라도 감시 대상 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한 오염 우려가 있을 때는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확산시킬 우려 여부에 대한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사전에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동물위생과 및 동물검역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동물 검역 절차 】



【 축산물 검역 절차 】



2. 식물검역

□ 식물방역법

- 식물방역법(植物防疫法)은 병충해가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할 수 없는 것, 법령에 의한 검사를 거쳐 수입할 수 있는 것, 검사를 받지 않고도 수입 할 수 있는 것으로 구분 관리 하고 있다.

□ 대상물품

〈수입 금지 식물류〉

- 피해가 큰 병충해가 발생한 지역으로부터 그 병충해의 기생식물 및 병해충, 흙 또는 흙이 묻은 식물 등은 수입할 수 없음
 - 같은 식물이라도 국가 또는 지역에 따라 수입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특정 지역에서 야생하는 경우 수입이 금지되기도 함
 - 금지품이라도 시험·연구·전시용의 경우 농림수산대신 허가를 받고 수입가능

〈식물방역 검사대상 식물류〉

- 야채, 과일, 곡류, 콩류, 건조목초, 절화, 관상용식물, 종자, 묘목, 구근, 관상용 식물, 목재(製木 제외), 향신료, 한방약원료, 목제포장재 등은 검사 후 수입 가능

〈식물방역 검사제외 식물류〉

- 식물은 원칙적으로 모두 검사 대상이 되나, 가구와 같이 제품화된 것, 차와 같이 고도로 가공된 것, 병해충에 의한 오염 우려가 없도록 병 또는 캔 등에 밀봉된 향신료, 식품 등은 식물방역 검사를 받지 않고 수입할 수 있음
 - 예를 들면 목재, 방부 목재, 목공품, 대나무가공품 및 가구 집기, 등나무 및 코르크, 마대, 면, 제차, 건조 죽순, 살구, 무화과, 감 등의 건조 과일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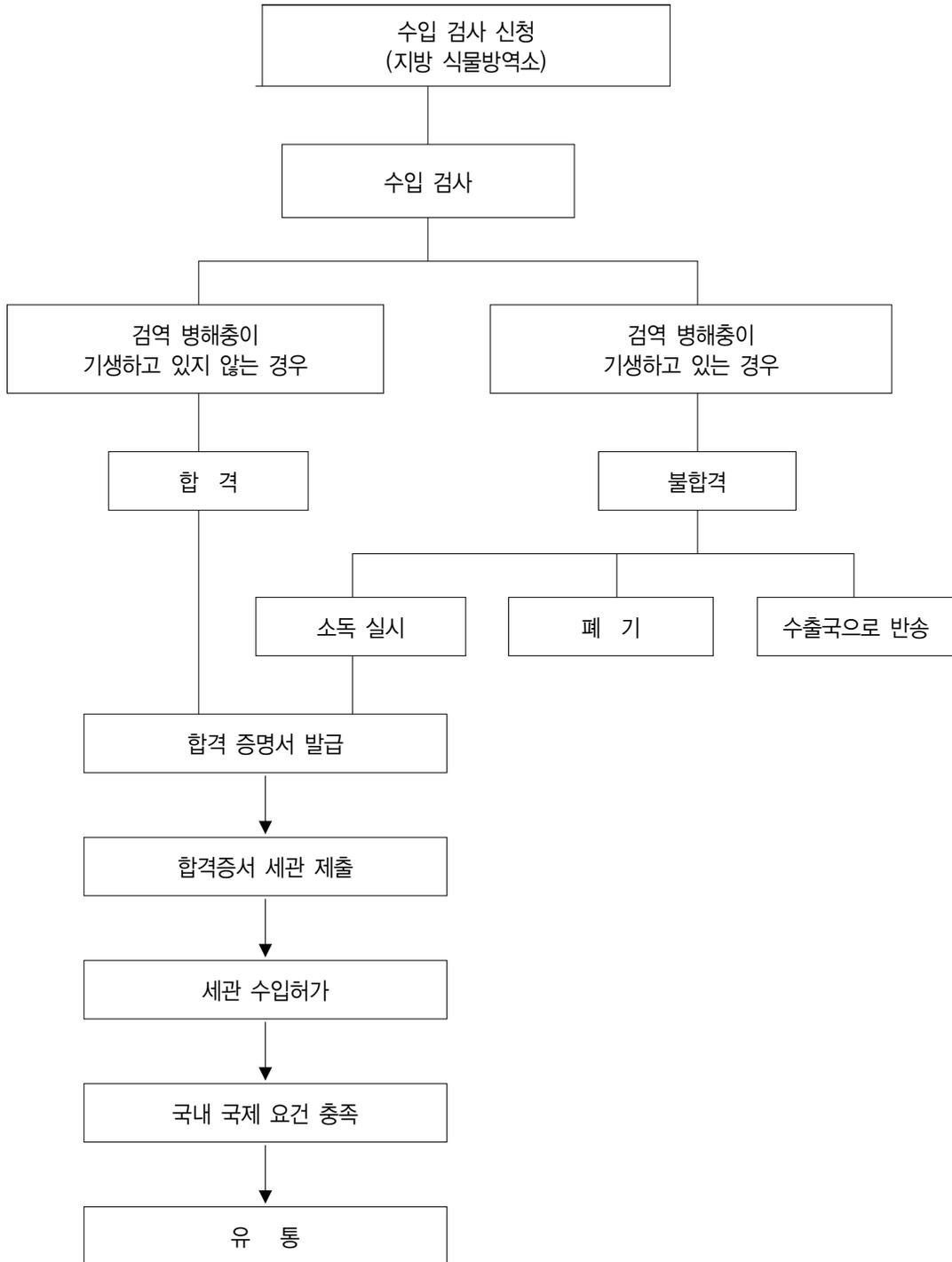
- 검사대상 물품은 일반화물, 휴대품, 국제우편물 등의 운송 형태, 중량, 용도 (기념품, 자가 소비 여부 등)에 관계없이 모두 검역을 받아야 한다.

□ 검역절차

- 검사대상 식물류 등을 수입하려면 「식물, 수입금지품 등 수입검사신청서」 1통에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급하는 검사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를 첨부하여 식물방역소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방역소의 검사 결과에 따라 「식물검사 합격증명서」, 「식물 수입허가 증명서」등을 발급 받아 세관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은 후 통관하게 된다.
- 또한 세관은 우편물 또는 휴대품으로 수입되는 규제대상 식물류 등에 대해서는 식물방역소가 해당 식물류 또는 그 포장 용기에 날인한 「식물검사합격증인」 도장 등을 확인한 후 통관을 허가한다.
- 식물은 같은 품종이라도 재배 지역에 따라 수입이 금지되기도 하고, 가공품이라 하더라도 검사 대상이 되는 것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재배지 검사를 필요로 하는 식물 등」*, 동 별표2 「수입금지 지역, 식물 및 검역 유해동식물」을 검토하고,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식물방역과 및 식물방역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식물 방역 절차 】



3. 식품검역

□ 식품위생법

- 식품위생법(食品衛生法)은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공중위생의 관점에서 필요한 규제 기타 조치를 강구하여 음식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 상기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위생적인 식품, 후생노동성대신이 정한 i)제조·사용 기준 ii) 성분 규격 iii)표시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iv)잔류 농약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식품 등은 수입 또는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규제를 하고 있다.(제6조, 제8조, 제11조, 제16조, 제17조 및 제19조)
- 수입자에게는 매 수입시마다 후생노동성 검역소에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고(제27조), 필요한 경우 검역소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하여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만 하여 수입·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5조 내지 제26조)

□ 대상물품

- 수입 식품 신고를 하여야 하는 물품은 판매용 또는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기구, 식품포장용품이 대상이 되며, 이들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나 개인이 자가용으로 사용할 것은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상 법제4조)
- 이 외에 영유아용 장난감이 그 대상이 되므로 영유아용이 아닌 일반 장난감은 수입식품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할 수 있다. (법 제62조)

□ 식품

- 식품위생법에 말하는 식품은 가공하지 않은 신선한 동물성·식물성 식품에서부터 가공식품까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식사용으로 먹고 마시는 식품 외에 기호식품·건강식품·알콜음료(주류) 등도 포함된다.

- 다만, 원암코프라(코코넛 과육을 말린 것), 식용유 원료 유지, 조당(정제하지 않은 설탕), 粗溜알콜(증류주의 원료), 당밀, 채종, 맥아, 호프는 식품위생법의 규제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또한 의약품 및 의약부외품은 약사법에 의한 규제대상이 된다.

□ 식품 첨가물

-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의 제조과정에서 또는 식품가공이나 보존을 위하여 식품에 첨가, 혼합, 침윤,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물질을 말한다.
- 여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솔빈산, 안식향산, 타르 색소 등의 규격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경우), 기존 식품첨가물 목록(1996년, 후생성 고시 제120호)에 등재된 천연첨가물(치자황색소, 감탄닌 등의 천연첨가물), 그 자체로도 음식이며 일반적인 식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첨가물(딸기 주스, 녹차 등의 첨가물)이 포함된다.

○ 천연향료

천연향료란 동식물에서 얻은 물질 또는 그 혼합물로서 식품의 착향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첨가물(바닐라향료 등)을 말한다.

○ 기구

기구란 「식기, 요리기구, 기타 식품 또는 첨가물의 채집,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진열, 수수 또는 섭취용으로 사용되거나 식품 또는 첨가물에 직접 접촉 하는 기계, 기구, 기타 물건」을 말한다.

즉, ①식품 또는 첨가물의 제조용/가공용 기계나 기구 등 식품 또는 첨가물에 직접 접촉하는 물건과 ②조리에 사용하는 식칼, 도마, 식품 저장용 냉장고, 냉동고, 식품 운반 기구, 젓가락, 접시를 비롯한 식기 등, 식품 채집 및 제조에서 섭취에 이르기까지 식품 또는 첨가물에 직접 접촉하는 모든 기계, 기구를 의미한다. 다만, 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기 위해 사용되는 팽이, 어망 등의 기계, 기구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 포장·용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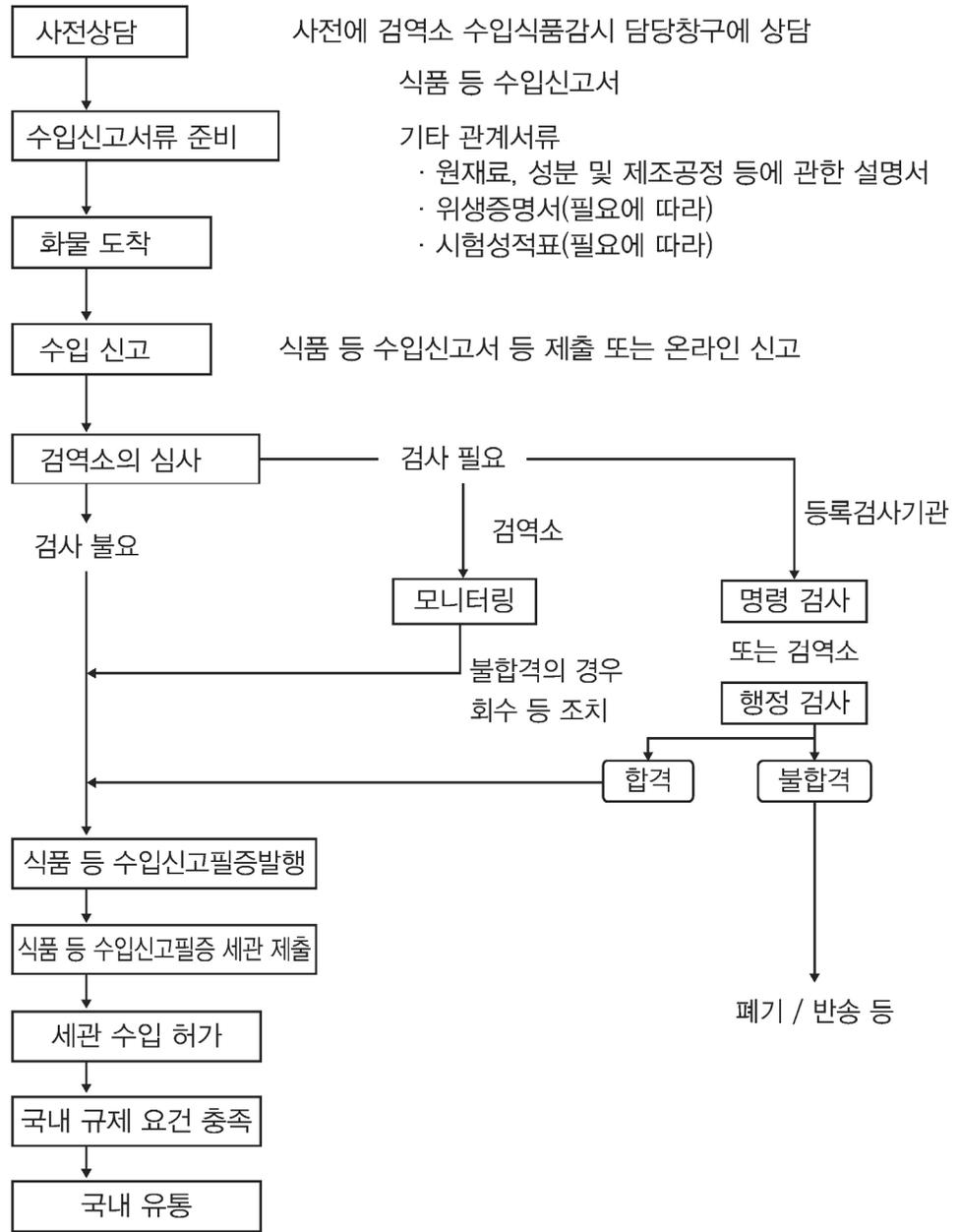
포장·용기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첨가물을 수수하는 경우에 그대로 전달되는 것」을 말하는 바, 식품 또는 첨가물 등을 판매할 때 사용하는 병, 캔, 합성수지제 등의 포장용기가 포함된다.

□ 검역절차

- 위에서 설명한 식품류를 수입하려는 자가 검역소에 수입신고를 하면, 검역소는 서류심사, 물품검사 절차를 거쳐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 적합 판정을 한 경우 검역소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발급하며, 수입자는 이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고 통관을 하게 되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용도를 바꾸어 다른 용도로 통관하는 방법, 재가공 등을 거쳐 다시 적합성을 판정 받는 방법, 폐기처분하는 방법 또는 수출국으로 반송시키는 방법 등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처리하게 된다.



【식품 수입 검역 절차】



□ 식품수입 신고

- 판매(불특정 다수에 대한 판매 이외의 배포 포함)용으로 제공하거나 영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포장용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 시마다 후생노동성 검역소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법 제27조)
- 화물 도착 예정일 7일전부터(화물에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반입 후) 수입항을 관할하는 검역소에 신고한다. 다만 반입 전에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화물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입 후 즉시 그 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해당 검역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32조)
- 수입 신고는 아래 ‘식품 등 수입 신고서’에 필요한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검역소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전자적으로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후생노동성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후생노동성〉

[식품 등 수입 신고서]

후생노동대신 귀하

수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 명칭 및 소재지)

신고접수번호	※1	성명 (1)	(印)
신고 종류	(2) 사전·계획수입	주소	
수입코드	(3)	(전화번호)	
생산국코드	(5)	수입식품위생관리자등록번호	(4)
제조사명, 주소·코드	(6)		
제조장소명, 주소·코드	(7)		
수출자명, 주소·코드	(8)		
포장자명, 주소·코드	(9)		
적재항·코드	(10)	적재년월일	(11) 년 월 일
하역항·코드	(12)	도착년월일	(13) 년 월 일
보관창고· 코드	(14)	반입년월일	(15) 년 월 일
		신고년월일	(18) 년 월 일
화물 기호 및 번호	(16)	사고 유무 (있는 경우 그 개요)	(19) 무 · 유
선박/항공기의 명칭 및 편명	(17)	제출자·코드	(20)

1	화물별	(21)식품첨가물기구용기포장장난감	계속	(22) Y·N	위생증명서번호	(32)
품목 코드	(23)				화물이 가공식품일 경우 원재료·코드화물이 기구, 용기포장 또는 장난감일 경우 그 재질·코드	(33)
품명	(24)					
적재수량	(25)					
적재중량	(26)		kg			
용도 코드	(27)				화물이 첨가물을 포함한 식품의 경우 해당 첨가물의 품명·코드 화물이 첨가물제제의 경우 그 성분·코드 (양쪽 다 확장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제외)	(34) ※2
포장종류 코드	(28)					
등록번호 1	(29)					
등록번호 2	(30)					
등록번호 3	(31)					
화물이 가공품 일 경우 제조 및 가공방법 코드	(35)					
비 고						신고필 인

〈주의〉

※ 1란은 기입하지 마세요.

※ 2란은 화물이 식품일 경우 첨가물의 품명은 일반적으로 식품으로서 음식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첨가물로 사용되는 것은 규격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에 한하고, 화물이 첨가물제재의 경우의 성분은 일반적으로 식품으로서 음식에 사용되는 물품을 제외합니다.

※ 수입자의 기명 날인은 서명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화물별	식품첨가물기구용기포장장난감	계속	Y·N	위생증명서번호														
품목 코드					화물이 가공식품 일 경우 원재료코드 화물이 기구, 용기포장 또는 장난감일 경우 그 재질코드													
품명																		
적재수량																		
적재중량				kg														
용도 코드					화물이 첨가물을 포함한 식품의 경우 해당 첨가물의 품명코드 화물이 첨가물제재의 경우 그 성분코드 (양쪽 다 착항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제외)													
포장종류 코드																		
등록번호1																		
등록번호2																		
등록번호3																		
화물이 가공품일 경우는 제조 및 가공방법 코드																		
비 고																		

화물별	식품첨가물기구용기포장장난감	지속	Y·N	위생증명서번호														
품목 코드					화물이 가공식품일 경우 원재료코드 화물이 기구, 용기포장 또는 장난감일 경우 그 외 재질코드													
품명																		
적입수량																		
적입중량				kg														
용도 코드					화물이 첨가물을 포함한 식품의 경우 해당 첨가물의 품명코드 화물이 첨가물제재의 경우 그 성분코드(양쪽 다 착항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제외)													
포장종류 코드																		
등록번호1																		
등록번호2																		
등록번호3																		
가공품일 경우는 제조 및 가공 방법 코드																		
비 고																		

[식품 등 수입신고서 첨부서류]

대상 식품 등	첨부서류
가축 등(소, 말, 돼지, 면양, 산양, 수소)의 고기와 장기 및 이것을 원료로 한 식육제품	수출국 정부기관의 위생증명서
콜레라 오염지역에서의 생선어패류	수출국 정부기관의 위생증명서
복어	수출국 공적기관의 위생증명서
대형 낙화생	수출국 정부/공적검사기관의 위생증명서
수출국 공적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은 것	수출국 공적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
가공식품 중 처음으로 수입되는 것	지정검사기관의 자율검사 성적서 상품설명서 *
동일식품 등의 계속 수입	6개월 이내에 실시한 지정검사기관의 자율검사 성적서 또는 행정검사 합격시의 수입 신고 필증 사본
시안화합물 함유 잡두	서약서, 시안 함유 검사 성적서
타르 색소	제품 검사 서약서
표시가 필요한 식품, 첨가물	표시설명서 또는 표시의 내용

- 최초 수입되는 물품인 경우 검역소는 통상 제조자가 작성한 ‘원재료 성분표’ 및 ‘제조공정설명서’, 제품의 용도, 사용법, 주의사항, 제조자, 제조공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상품설명서’를 요구하고, 품목에 따라서는 유전자변형식품 검사증명서, 광우병 미감염 증명서 등도 요구하게 됨.

따라서 수출자는 선적하기 전에 수입자 및 해당 검역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서류를 준비해야 통관이 지연되는 사태를 방지 할 수 있음.

□ 서류심사

- 수입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검역소는 앞에서 설명한 수입신고서 첨부서류 검토 등을 통하여 주로 아래 ①~⑥의 항목별로 위생상 문제가 없는지 또는 시험성적 검사가 필요한지를 심사한다.

- 시험성적검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검역소가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검역소에 제출해야만 통관이 가능하다. 컨테이너 규모의 대량 물품을 수출하기 전에 반드시 소량의 샘플 수출을 통해 시험성적증명서를 발급받아 본 후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 본선 컨테이너로 수출을 하는 것이 무난하다.
- 검사 해야할 항목은 사전에 검역소에 성분표와 제조공정표 제출을 통해 이메일 또는 직접 상담에 의해 판정 받을 수 있으며, 일본정부가 인정하는 한국내 지정 검사기관이 있으므로 이들 기관을 이용하는 것도 시간절약과 경비를 절감하는 유효한 방법이다.
 - 지정검사기관은 도보건환경연구원 등 공적검사기관과 한국식품연구소등 민간 검사기관이 있으며 검사의뢰시에는 반드시 일본수출용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심사 결과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되, 물품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뒤에서 설명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 ①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제조 가공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② 첨가물의 사용기준이 적절한지 여부
 - ③ 유독 유해 물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 ④ 과거 위생상 문제가 있는 제조자·제조장소 여부
 - ⑤ 처음 수입되는 물품인지 여부
 - ⑥ 운송 도중 위생상 문제를 일으킬 여지가 있는지 여부



제3절 품목별 검역 유의사항

1. 과자(비스킷, 쿠키)

□ 검역일반사항

- 수입관세에 대하여 [관세분류번호(HS코드)]
곡물, 곡물가루, 전분 또는 우유 조제품 및 베이커리 제품 (HS1905)이 기본.
원재료 및 성분 에 따라 세율이 6%~34%로 다양하므로 확인 필요
(http://www.customs.go.jp/tariff/2014_4/data/j_19.htm)
- 판매목적으로 수입 할 경우, 후생노동성 검역소 식품 등 수입신청 접수 창구에 「식품 등 수입신청서」와 필요서류 (원재료, 성분 및 제조 공정 등에 관한 설명서, 위생증명서 (필요에 따라), 시험성적서(필요에 따라))를 제출. 심사 결과 규격 기준 또는 안전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물건은 검사를 실시. 심사 및 검사를 통해 해당 법률상 문제가 없는 경우 세관으로 수입신고 때 통관서류와 함께 검역소로부터 발행받은 「식품 등 수입 신청 완료증」을 제출함. 부적격 판단을 받은 것은 수입이 불가능 하며, 수입자는 환송 또는 폐기 등 조치 필요

□ 법률규제

- 잔류 농약 등의 규제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에 의해 일정 이상의 농약이 잔류하는 식품의 판매를 금지

□ 식품 첨가물의 규제

- 일본에서 사용 금지가 된 식품 첨가물과 사용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있어, 그에 대한 사용의 유무 등을 유의할 것

수입절차시 선행 샘플

- 선행 샘플의 취급은 실제 판매, 영업목적으로 수입된 식품 과의 동일성 확인이 곤란한 등의 이유로 폐지됨

표시 의무

- 용기포장에 들어있는 가공품을 판매할 경우 해당 법에 준하는 표시의무가 있음. 정해진 사항 (내용성분, 기한표시, 보존방법, 취급 방법등)을 표시할 필요가 있음

알레르기 표시

- 계란, 우유, 밀가루, 메밀, 땅콩등 알레르기 표시제도로 특정 원재료 (또는 이것에 준하는 것들로 지정되어 있는 품목을 포함한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적절한 표시가 의무. 이것에 준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표시가 필요

판매시의 규제

제품을 수입한 경우에는 일본 국내 판매시 상품 표시 내용에 유의해야 함

- 농림물자의 규격화 또는 품질 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JAS법)
국내 판매시에는 JAS법에 의거한 품질표시기준에 따라 일괄 표시를 행할 필요가 있음. 수입품에는 원산지 (국가)표시가 의무
- “유기” “오가닉”으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유기 JAS기준에 의거한 등록인정기관의 검사 및 인정이 필요
- 건강증진법
칼로리 또는 탄수화물 등과 같이 건강에 영향이 있는 영양성분 표시
- 부당경품류 또는 부당표시방지법 (경품표시법) / 공정경쟁규약
동 법에 의해 과도한 경품 포함 판매 혹은 소비자가 오인할만한 위험이 있는 과대, 허위표시 등을 금지

또한 동 법에 의거하여 [비스킷류의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비스킷 업에 있어 경품류의 제공 제한에 관한 공정경쟁 규약]의 업계자주기준이 있음

- 더불어 당 규약에 [비스킷]이란 밀가루, 당류, 식용유지 혹은 식염을 원료로써 필요에 의해 전분, 유제품, 계란제품, 팡창제, 식품첨가물 등의 원재료를 배합하고 또는 첨가한 것들을 혼합기, 성형기 또는 비스킷오븐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을 말함. 또한 당 규정에 [쿠키]로 표시할 수 있는 비스킷은 손으로 만든 듯한 외형으로 당분, 지방분의 합계가 중량백분비로 40%이상의 것으로 기호에 따라 계란, 유제품, 견과류, 건조과일, 꿀 등으로 제품의 특징을 살려 풍미를 좋게 만든 것을 말함
- 건강증진법
동 법에 의해 영양성분 또는 영양에 관한 표시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영양표시 기준]에 따라 표시가 의무화 되어 있음

2. 삼계탕

□ 검역일반사항

- 수입관세에 대하여 [관세분류번호(HS코드)]
닭고기조제식료품(HS16류)
- HS코드 : 160232
- 관세율 : 최소치(0.0%)~최대(21.3%)
(http://www.customs.go.jp/tariff/2014_4/data/j_16.htm)

□ 가축전염병 예방법

- 닭고기는 동 법에 의거하여 [지정검역물]이며, 수입시에는 지정기일까지 수입항을 관할하는 동물 검역소에 [수입검사신청서(가축물)]에 수출국정부기관이 발행한 [검사증명서]등의 필요서류와 함께 신청해야 함 (법 제40조)

- 검사 결과, 합격하게 되면 [수입검역증명서]가 교부됨 (법 제44조, 제45조) 가
금육에 대해서는 조류독감 발생국,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이 금지. 국가, 지역에
대해서는 발생 상황에 따라 변경 있으며, 닭고기를 원료로 하는 소시지등의 유
래 제품에 대해서도 동일함

□ 식품 위생법

- 판매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후생노동서 검역소 식품등수입신고 접수 창구에
「식품 등 수입신고서」 그 밖의 필요한 서류 (원재료, 성분 또는 제조공정등에 관
한 설명서 위생증명서 (필요에 따라) 시험성적서(필요에 따라))를 제출
- 심사결과, 규격기준과 안전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가 실시되
며, 심사 및 검사가 동 법상 문제가 없다면 세관으로의 수입신고시에 통관서류
와 함께 검역소로부터 발행되는 「식품 등 수입신고 완료증」을 제출하고, 부적격
이라 판단된 경우 수입이 않되기 때문에 수입자는 환송 또는 폐기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 식육의 수입에는 수출국정부 기관 발행에 의한 위생증명서의 첨부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
 - 식육제품은 동 법에 의거한 성분, 제조, 보존에 대해서 규격 기준이 있음
 - 식품 첨가물과 사용기준이 정해져 있는 물질의 유무 등을 주의할 것. 일본에서
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발색제, 착색료, 보존료 등의 식품첨가물이 사용되어
지고 있는 경우가 있음
 - 잔류농약기준(포지티브리스트 제도)에 대해서도 규제가 있으며, 일정이상의
농약, 사료첨가물, 동물용 의약품등이 잔류하는 식품의 판매 등은 금지

□ 관련 규제

- 알레르기 물질의 표시제도
표시권유품목이 지정되어 있으며 가공식품에는 적절한 표시가 권장됨. 또한 소

시지등의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계란, 유제품, 밀가루 등 특정 원재료지정품목을 포함한 식품은 표시가 의무화 되어 있음

- 농림물자의 규격화 또는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JAS법)
식품위생법 외에 판매 시에는 동법에 의거한 품질 표시기준에 따른 일괄표시를 해야 하며, 수입품에는 원산지(국가) 표시가 의무임. 식육제품에는 개별품질 표시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주의
- 건강증진법
칼로리, 탄수화물 등 건강에 영향이 있는 영양성분 표시 할 것
- 경품표시법(부당경품류 또는 부당표시방지법)/ 공정경쟁규약
동법에 의거한 업계 자주표시규약으로써 전국 식육공정취득협의회에 의한 [식육의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협, 소시지류 공정취득협의회에 의한 [협, 소시지류의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이 있음

3. 소스류

□ 검역일반사항

- 수입관세에 대하여 [관세분류번호(HS코드)]
 - 간장 (HS2103.10.000)
 - 토마토 케첩 (HS2103.20.010) / 관세율 7.2%
 - 기타 토마토 소스 (HS2103.20.090) / 관세율 17%
 - 머스터드 분말 및 걸쭉하게 제조한 머스터드 (HS2103.30) / 관세율 9%
 - 드레싱 (HS2103.90.120) / 관세율 10.5%
 - 우스터 소스 (HS2103.90.130) / 관세율 7.2%
- ※성분 및 원재료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직접 확인이 필요
(http://www.customs.go.jp/tariff/2014_4/data/j_21.htm)

□ 관련 규제

○ 관세 정률법 / 관세 잠정 조치 법

관세 할당은 농림수산성이 매년 수입 할당 수량을 정하여 수입자의 신청에 따라 수입 물량을 할당하고 이 할당량을 넘어 수입되는 경우에 높은 관세 (이차 세율) 을 적용하여 국내 생산자 보호를 도모하는 제도임. 소스의 조성에 따라, 토마토 케첩, 토마토 및 토마토 페이스트 (HS2002.90)는 EPA (경제 연계 협정) 관련 관세 할당 범위가 있는 등 분류가 복잡한 품목이 있음

○ EPA

일본과 한국의 EPA는 협상 중단 중이며, EPA에 기반한 특정 국가 /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율 또는 개별 관세 할당 제도가 병존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함. EPA에 근거한 특정 국가 /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율 또는 개별 관세 할당 제도의 적용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별도 절차가 필요함

○ 식품위생법

규제내용으로써 수입시에는 농산물의 농약잔류기준 (농약의 각 식품중의 잔류량의 한도에 유의해야 하며, 식품 위생법에 의거한 후생성고시 제370호 [식품 첨가물등의 규격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음(잔류농약등의 관한 포지티브리스트제도) 또한 포지티브리스트에는 없고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약 등이 허용되는 일정량은 0.01ppm 이하 임

○ 식품첨가물

식품 첨가물 사용기준에 정해져 있는 물질의 함유를 주의해야 함. 일본에서는 사용에 규제가 있는 발색제, 착색료, 보존료 등의 식품 첨가물이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있음. 예를 들어 산화방지제 (BHA, BHT, TBHQ 외), 보존료 (안식향산, 솔빈산 외) 착색료 (Allura Red AC, Azorubin, Quinoline Yellow WS 외) 등의 식품 첨가제가 사용되어지는 외국제품이 있으나 이것들은 일본에서 사용이 인정되지 않거나 혹은 인정이 되나, 사용 대상 품목과 제한량에 위반이라고 판단되어지면 수입이 불가능함

- 농림물자의 규격화 또는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JAS법)
 - 국내 판매시에는 JAS법에 의거한 품질 표시기준에 따라 일괄 표시를 하며, 수품에는 원산지(국가)표시가 의무화 되어 있음
 - 다음 소스류는 가공식품품질 기준에 따라 기재해야 함
 - 토마토가공품
 - 드레싱 또는 드레싱타입의 조미료
 - 우스터 소스류
 - 간장
 - “유기” “오가닉”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유기 JAS기준에 의거한 등록 인정 기관의 검사 후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음
 - 경품 표시법 (부당 경품류 또는 부당 표시 방지법) / 공정경쟁규약
 - 경품 포함 판매 혹은 소비자가 오인할만한 위험이 있는 과대, 허위표시등을 금지 또한, 소스류에 관해서는 업체단체가 공정경쟁규약을 정하고 있음
 - ① 전국 토마토 가공품업 공정 취급 협의회 (경품, 표시)
 - ② 간장업 중앙 공정 취급 협의회(경품, 표시)
 - ③ 일본 소스업 공정취급 협의회(경품)
 - ④ 전국 드레싱류 공정 취급협의회 (표시)
 - 건강 증진법
 - 영양 성분 또는 열량에 관하여 표시를 할 경우 [영양표시기준]에 따른 표시가 의무화 되어 있음
- 자원유효이용촉진법 / 용기 포장 리사이클 법**
- 병, 페트병, 제지용기, 플라스틱 용기, 스틸 캔, 알루미늄캔 등은 분별회수촉진을 위해 재료 식별 표시가 의무화 되어있음. 특정 사업자(수입업자를 포함)는 용기 폐기물의 재상품화가 의무화 되어 있음

4. 음료(에너지 드링크)

□ 검역일반사항

○ 수입관세에 대하여 [관세분류번호(HS코드)]

음료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분류의 가능성이 있음

- ① 미네랄워터(HS2201) / 관세율 : 3%
- ② 감미료 또는 향미료를 첨가한 물 (HS2202) / 관세율 : 9.6%~13.4%
- ③ 알콜분 0.5%이상의 주스(제22류)과실 또는 야채주스(HS2009)
 - 에너지 드링크의 경우, ②으로 추정

(http://www.customs.go.jp/tariff/2014_4/data/j_22.htm)

○ 식품위생법에 의한 규제 내용

수입시에는 농산물의 농약잔류기준 (농약의 각 식품중의 잔류량의 한도에 유의. 이것은 식품 위생법에 의거한 후생성고시 제370호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으로 규정(포지티브리스트제도). 단, 포지티브리스트에는 없고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약 등이 허용되는 일정량은 0.01ppm 이하 임. 또한 식품 첨가물과 사용기준에 정해져 있는 물질의 함유를 주의해야 함. 일본에서 인정되어지지 않는 식품 첨가물과 사용기준이 정해져 있는 물질로써 보존료, 착색료 등이 함유되어 있는지 유의해야 하며, 예를 들어 생과일주스 등은 잔류 농약기준 (포지티브리스트제도)에 대하여도 주의가 필요함

□ 관련 규제

○ JAS법 농림물자의 규격화 또는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원재료와 내용량 등 품질에 대한 표시)

국내 판매시는 JAS법에 의거한 품질 표시기준에 따라 일괄 표시를 행함. 수입 품에는 원산지(국가) 표시를 의무화 하며, 음료와 같은 경우 [과실음료], [탄산음료], [두유류], [당근 주스 또는 당근 믹스주스]로 각각 개별 품질 표시 기준이 정해져 있음. 상기 4품목과 [사과 스트레이트 퓨어 주스]에는 임의 JAS규격

이 있음. 판매시에 알레르기 물질 표시 제도에 따른 특정 원재료와 이것에 준하는 표시추장품목(오렌지, 키위, 바나나, 복숭아, 사과 등)을 포함한 경우 적절한 표시가 필요 함

○ 건강증진법

(칼로리 및 탄수화물등 건강에 영향을 주는 영양성분 표시)

영양성분과 열량에 관한 표시 (임의)를 할 경우 동 법에 의거한 영양표시기준에 따른 표시를 의무화 하고 있으며, [혈압 유지] 등 생리학적 기능에 영향을 주는 특정 보건용도에 적합한 표시를 할 경우에는 소비자청에 따른 [특정보건용 식품]의 인가절차가 필요함

○ 부당경품류 또는 부당 표시 방지법 (경품표시법) / 공정경쟁규약

과도한 경품 부속 판매와 소비자에 오인될 만한 위험이 있는 과대, 허위 표시는 금지되어 있으며, 또한 동 법에 의거한 업계규약으로 과실음료 공정취급 협의회에 의한 과실음료의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이 있음

○ 자원 유효 이용 촉진법 / 용기 포장 리사이클법

유리, 제지용기, 페트병 등은 분별회수 촉진을 위해 재료 식별 표시가 의무화 되어 있으며, 특정 사업자 (수입업자를 포함)은 용기 폐기물의 재상품화가 의무화 되어 있음

□ 기타 규제

○ 관세정율법/관세잠정조치법 (관세할당)

토마토 주스 중에 함유물 건조중량이 7%이상의 것은 토마토 퓨레, 페이스트와 동일하게 HS2002.90으로 분류 되어 관세할당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음. 관세할당은 농림 수 산성이 매년 수입 할당 수량 (기본 세율)을 정하여 수입자의 신청에 따라 수입 물량을 할당하고 이 할당량을 넘어 수입되는 경우에는 높은 관세 (이차 세율) 을 적용하여 국내 생산자 보호를 도모하는 제도. 관세 할당에 의한 1 차 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 전에 관세 할당 신청 절차가 필요

5. 돈육 가공품

□ 검역일반사항

○ 수입 관세에 대한 “세 번 (HS 코드)”

돼지고기 (성상 등에 따라 다름) (HS0203, HS0206, HS0210)

소시지 등 조제품 (HS16 류)

- 돼지고기 (http://www.customs.go.jp/tariff/2014_4/data/j_02.htm)
- 소시지 등 조제품 (http://www.customs.go.jp/tariff/2014_4/data/j_16.htm)

○ 차액관세제도

돼지고기 수입시 보통 육류 제품으로 규제 이외에 차액 관세 제도가 있음. 수입품의 가격이 낮을 때는 기준 수입 가격보다 낮은 부분을 관세로 징수하여 국내 양돈 농가를 보호하는 한편, 가격이 높을 때에는 종가세를 적용하여 관세 부담을 경감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제도임

- 소시지 등의 조제품에서 돼지고기로 분류 될 수 있는 것
 - 축산물 통조림 및 축산물 병조림
 - 베이컨 류
 - 햄류
 - 프레스 햄 혼합 프레스 햄
 - 소시지 혼합 소시지
 - 냉장 햄버거 스테이크 (햄버거 패티)
 - 냉장 미트볼·레토르트 파우치 식품 냉장 만두
 - 조리 냉동식품 등

○ 가축전염병 예방법

소, 돼지, 양 등의 우제류의 고기는 동 법의 [지정 검역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입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동물검역소로 상담하고, 수입의 가불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수입시에는 수입항을 관할하는 동물 검역소로 아래의 자료를 제출함

- ① 수입검사신청서(축산물)
- ② 수출국정부가 발행하는 검사 증명서

동물 검역의 결과 합격하면 [수입검역증명서]가 교부됨(법 제 44조, 제 45조). 또한 악성 가축 전염병 (아프리카 돼지 콜레라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 가능 지역이 한정되어 있음(동 시행규칙 제 43조). 돼지고기를 원료로 하는 소시지, 햄, 베이컨 등의 유래제품에 대해서도 동일

※ 2015년 현재 돼지고기는 구제역으로 수출이 불가능하나 가열처리공정을 거친 돼지고기에 관해서는 일본의 동물검역소에서 인증한 가공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만 수출 가능함 (<http://www.maff.go.jp/aqs/tetuzuki/facility/heat-building.html>)

□ 식품 위생법

- 식품의 수입에 있어 동 법의 규제를 받으며 후생성고시 제370호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수입 할 수 없음
- [참고] 식품 위생법에 따른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 기준
 - 식품 일반의 규격 기준 이외에, 육류 제품은 성분 규격 (아질산 뿌리 : 0.070g, 1kg 이하 등) 및 제조·저장 기준의 규정이 있으며 동 규격 기준에는 잔류 농약 (포지티브리스트에 없는 농약의 허용치는 0.01ppm 이하) 식품 첨가물 등의 함유에 관한 규정이 있음. 잔류 농약 등의 규제는 포지티브리스트 제도에 의해 일정 이상의 농약, 사료 첨가제 및 동물 용 의약품 등이 잔류하는 식품의 판매 등이 금지되어 있음
 - 과거 위반사례에는 중국산 돼지고기와 해당 육류 가공품으로 부터 크렌브테놀 (동물용 의약품)이 검출되었으며 수출신고를 비롯한 전품(제 26조 3항) 검사 명령이 내려짐.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발색제등의 식품 첨가물이 사용되어진 적이 있음. 판매목적으로 수입된 경우, 수입항을 관할하는 후생노동성 검역소 수입식품감시담당으로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함
 - ① 식품 등 수입 신고서
 - ② 원재료, 성분 또는 제조공정 등에 관한 설명서 (보존방법 등을 표시한 자

- 료, 수입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검사 기관분석의 성적표등)
- 심사단계에서 규격기준이 안전성에 관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검사가 실시되며, 심사, 검사에 의한 동법상의 문제가 없으면 신고완료증이 돌아오므로 세관으로 수입 신청시에 통관서류와 함께 제출함. 부적격이라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수입이 불가능하며 수입자는 환송,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함

□ 관련 규제

○ 건강 증진법

영양 성분과 열량에 관한 표시 (임의)를 추진할 경우 [건강증진법]에 의거하여 [영양 표시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함

상기의 법률에 따라 수입하는 식품에는 일본어, 주로 이하의 내용의 라벨표시가 필요하며, 내용은 식품에 따라 다름

- ① 식품의 명칭
- ② 원재료 명
- ③ 유전자 변형유무
- ④ 첨가물
- ⑤ 알레르기
- ⑥ 내용량
- ⑦ 원산지
- ⑧ 유통기한, 소비기한
- ⑨ 보존방법
- ⑩ 제조자 이름
- ⑪ (임의) 영양 표시

○ 농림물자의 규격화 또는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JAS법)

국내 판매시는 JAS법에 의거한 품질 표시 기준에 따른 일괄 표시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수입품에는 원산지 (국가) 표시가 의무화 되어 있음. 신선식품은 [신선식품품질표시사항], 가공식품은 [가공식품품질 표시기준] 냉동식품은 [야채냉동 식품

품질 표시 기준]등 관련 있는 품질 표시 기준의 확인이 필요함. 자세한 내용은 하기 소비자청 웹사이트 [품질표시기준 일람]을 참조

- 「소시지 등의 조제품에서 돼지고기로 분류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 JAS 규격(선택)이 있음. 또한, 생산 정보 공표 돼지고기의 JAS 규격 숙성 햄 류 숙성 소시지 류 숙성 베이컨 류의 특정 JAS 규격(모두 선택)도 있음. 덧붙여 「유기」, 「오가닉」라고 표시하기 위해서는 유기 JAS 기준에 따라 등록 인정 기관의 검사 후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음
- 부당 경품 류 및 부당 표시 방지법 (경품 표시법) / 공정 경쟁 규약
과도한 경품 부속 판매와 소비자에게 오인 될 우려가 있는 과대·허위 표시 등이 금지됨. 또한 동법에 근거하는 업계 표시 약관으로 전국 육류 공정 거래위원회에 의한 「식육의 표시에 관한 공정 경쟁 규약」, 햄·소시지 류 공정 거래위원회에 의한 「햄·소시지 류의 표시에 관한 공정 경쟁 규약」이 있음

제3장 관세제도

□ 관세제도 일반

- 국가 간 경제 교류가 활발 해지면서 일반적으로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며, 일본의 자원 조달 수단으로서의 역할과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수입품의 비용이 증가하여 수입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발생하므로 일본국내 산업 보호의 큰 역할 기능을 가지고 있다.

□ 사전 교시 제도

- 수입을 예정 하고 있는 화물의 관세 분류와 관세율 등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세관에 문서 조회를 지휘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사전에 미리 관세액을 알아 볼 수 있으며 판매 계획 등에 도움이 되며 다른 수입 신고의 실수를 줄이고 원활화를 도모)

□ 관세 등의 납부 기한 연장 제도

- 수입화물을 국내에 인수하기 위해서는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수입 허가가 나오지 않지만, 담보를 제공 할 것을 조건으로 3개월 이내의 납부 기한 연장이 인정되는 제도 (관세의 납부시의 부담 경감)

□ 특혜 관세 제도

- 개발도상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종류의 수입품에 대해 일반 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수출 소득의 증대, 산업화의 촉진, 경제 발전을 추진하는 제도 (특정 국가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줄이고 판매 경쟁력이 증가하며 따라서 그 나라의 진흥을 도모)

□ 감면세 제도 (관세 정률법)

- 화물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 한 경우에는 관세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면제되는 제도.
- 보세 지역에서 저장 중에 변질 손상 등이 있을 경우 감세
 - 재수입 면세
 - 재수입 감세
 - 재수출 면세
 - 재수출 감면
 - 생활 관련 물자의 가격 등귀시의 감면 세
 - 사료 원재료 등 제조용 원료품의 감면 세
 - 수입 때 와 동일한 상태로 재수출되는 경우의 세금 반환
 - 위약금 등의 재수출 또는 폐기의 경우의 세금 반환
 - 가공 또는 조립을 위한 수출 된 화물을 원료로 한 제품의 감세
 -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하여 수출 된 화물의 감세
 - 황족 해외 국가 원수 용 물품 등의 무조건 면세
 -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에서 어획 한 수산물 등의 감면 세
 - 학술 진흥 등의 관점에서 학술 연구 등 특정 용도에 제공되는 특정화물의 면세 (특정용도 면세)
 - 외교관용 화물 등의 면세
 - 수출화물 제조용 원료품의 감면세·세금 반환
 - 과세 원료 등에 의한 제품을 수출 한 경우의 면세 또는 세금 반환

□ 관세 잠정 조치 법에 관련된 감면 제도

- 항공기 부품 등의 면세, 가공 또는 조립을 위해 수출 된 화물을 원료로 한 제품의 감세, 가공 재수입 감세 제도
- 일본에서 수출 된 특정 원재료 (가죽, 섬유, 기타 부품 등)가 외국에서 가공 된 후 그 원료의 수출 허가 일로부터 1 년 이내에 특정 제품 (가죽 및 섬유 제품 등)으로 수입 하는 경우, 그 제품에 걸리는 관세 중 원자재 가격에 상당하는 부분의 관세를 감면하는 제도

제4장 라벨링제도

제1절 식품표시법 일원화

□ 식품 표시법 소비자청으로 일원화

- 일본내 판매 또는 수입되는 모든식품류에 대한 표시기준은 식품 위생법, JAS 법, 건강증진법 등 3법에 의해 관리 되어왔으나 서로 목적이 상이하고 제도가 복잡하게 되어 있어 소비자 및 사업자 모두 알기 쉬운 표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상기 3법의 식품 표시 규정을 통합하여 식품표시에 관해 포괄적으로 일원화 하였다. 또한, 임의로 되어 있던 영양표시에 대해서도 의무화 하였다.

□ 식품 표시기준의 통합운영

- 그동안 58개의 기준으로 운용되었던 식품에 대한 표시기준이 소비자청에서 1개의 일괄기준으로 2015년 4월 1일부터 통합운영 하고 있다.
- 표시 의무화가 되어있는 표시범위(식품, 사업자등)에 대해서는 현재와 동일
 - 예외사항 : 식품위생법과 JAS법 기준의 통합에 있어서 가공식품과 신선식품에 대한 구분 등을 변경
 - 식품위생법, 건강증진법(후생노동성 소관), JAS법(농림수산성 소관)
- 식품의 분류는 사업자의 분류에 따라 가공식품, 신선식품, 첨가물로 구분

제2절 품질 표시기준

□ 모든 가공식품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품질 표시기준

- 일반소비자 뿐만 아니라, 업무용, 용기 포장된 신선식품도 대상이며 모든 가공식품에 공통으로 표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 표시사항은 아래와 같음.

단, 업무용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아래 농림수산성 웹사이트를 참조

① 명칭

품명, 종류별, 명칭 등을 기재

[예] 품명: 쿠키, 종류별: 과자, 명칭: 구운과자 등

② 원재료명

사용한 원재료를 (가), 또는 (나)로 구분하여 이하 규정에 따라 기재

(가) 식품첨가물 이외의 원재료는 중량 배합이 많은 순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으로 기재. 단, 2종류 이상의 원재료 (이하, 복합원재료)는 복합원재료의 명칭 순으로 괄호안에 배합율이 높은 순으로 기재. 복합원재료의 배합비율이 주원재료에 5%미만인 경우 표기 생략 가능.

(나) 식품첨가물은 중량 배합이 많은 순으로 기재.

③ 내용량 (또는 고행량, 내용총량)

「특정 상품 판매 계량에 관한 법령」에 따라 중량은 그램 (킬로그램), 체적은 리터 (밀리리터), 수량은 개수 단위로 기재. 고행물에 충전액을 더한 통조림과 병조림의 경우 내용량 대신 고행량과 내용총량을 병기

④ 유통기한 (또는 상미기한)

수입자는 스스로의 책임으로 과학적 근거에 의한 적절한 기한을 설정하여 표시해야할 의무가 있음

(가) 제조로부터 유통기한까지 3개월 이내의 것은 다음 예 중에 하나를 기재

- 평성 26년 5월 31일



- 26.5.31
- 2014.05.31
- 14.5.31

(나) 제조로부터 상미기간까지 3개월을 넘는 경우, 다음 예 중에 하나를 기재

- 평성 26년 5월
- 26.5
- 2014.05
- 14.5

[주의] (나) 의 규정에 한정되지 않으며 (가)규정을 따라도 됨

⑤ 보존 방법

[직사광선을 피하고, 상온에서 보존, 「10℃이하에서 보존할 것」 등을 기재. 상온 보존하는 것 이외에 유의할 사항이 없는 경우 생략 할 수 있음. 「개봉 후 는 요 냉장」 등의 유의 사항이 있는 경우는 기재 필요

⑥ 제조업자등의 이름 (또는 명칭) 및 주소

⑦ 원산국명 (수입품의 경우)

용기 포장의 면적이 30평방cm 이하의 경우는 상기 2,4,5를 생략

□ 유기 JAS 제도

○ 유기농산물

농업의 자연환경 기능유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이하의 방법으로 생산된 농산물

- 화학 비료와 농약 사용을 하지 않은 것
- 퇴비 등으로 토양 만들기를 하고 파종 또는 이식전 2년 이상 금지된 농약,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재배지에서 생산
-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사용 하지 않은 것
- 사용 가능한 자재 (농약, 화학 비료 등)는 제한 등

○ 유기 축산물

농업의 자연환경 기능유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이하의 방법으로 생산된 축산물

- 가능한 한 환경의 부하가 적은 사료를 공급
- 동물용 의약품의 피한 것.
- 동물의 생리학적, 행동학적 배려로 사육된 가축. 가금류에서 생산된 것

○ 유기 가공식품

원재료의 유기적 특성을 제조 또는 가공 과정에서 유지하기 위해 다음의 방법으로 생산된 제품.

- 물리적 또는 생물의 기능을 이용한 가공 방법으로 생산.
- 화학적으로 합성된 식품첨가물 또는 약제 사용을 하지 않은 것.
- 원재료는 물과 식염을 뺀 95% 이상이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가공식품 일 것.

○ 명칭의 표시 및 규제

JAS 법에 따라 「유기 JAS 규격」에 적합하게 생산 되었는지를 등록 인증기관이 검사하고 그 결과 공인 된 사업자에만 “유기 JAS 마크”의 사용을 할 수 있으며, 마크가 없는 제품은 「유기○○」, 「오가닉△△」라고 표시할 수 없다. 위반시 50만엔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 JAS마크 등록인증기관 리스트는 농림수산성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登録認定機関名

JAS마크, 등록인증기관명

○ 유기JAS제도에 의한 유기 수입식품

(1) 우리나라의 유기 JAS 제도와 비슷한 수준에 있다고 인정되는 유기 인증 제도를 가진 국가에서 유기농산물 또는 유기농산물 가공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유기 JAS 제도에 따른 인증을 받은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의 정부 기관이 발행 인증서로 확인을 받고 유기 JAS 마크를 획득 했다.

2013년 4 월 1 일부터 해당 수입업자가 수출국의 유기인증 제도에 따라 인증 된 해외사업자에게 유기 JAS 마크 부착을 위탁 할 수 있도록 했다.

□ 추가적으로 적용해야 할 품질표시 기준

○ 유전자변형 식품에 관한 품질 표시 기준

- 대두 (팥콩, 대두 콩나물 포함), 옥수수, 감자, 유채, 목화, 알팔파, 사탕무, 파파야를 사용한 가공식품에는 「유전자변형」 「유전자변형을 분별」 「유전자변형 불분별」 「유전자 변형 없음」 등의 표시가 쓰여지고 있음

단, 하기에 해당하는 식품에는 유전자변형 농산물 사용의 유무가 표시 되지 않을 수도 있음

* 대두 (팥콩, 포함) 옥수수, 감자, 유채, 목화, 알팔파, 사탕무, 파파야 어떤 것도 주요 원재료가 아님

*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원재료로써 사용했으나 변형된 유전자 또는 유전자를 만드는 단백질이 제품 중에 남아있지 않음 (예: 기름 또는 간장)

* 유전자변형이 아닌 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음

○ 개별 가공식품의 품질표시 기준

이하의 품목에는 개별 품질표시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음.

- 통조림, 병조림

• 농산물 통조림 및 병조림, 축산물 통조림 및 병조림, 조리식품통조림 및 병조림

- 음료

• 과실음료, 탄산음료, 두유류, 당근쥬스 당근 믹스 쥬스

- 식육제품 또는 어육가공제품
 - 베이컨, 햄류, 프레스햄, 혼합프레스햄, 소시지, 혼합소시지, 냉장햄버거 스테이크, 냉장 미트볼, 어육햄 및 어육 소시지
- 곡류 가공품
 - 건조면류, 즉석면, 마카로니류, 냉동 두부, 빵 류
- 농산물 또는 임산물가공품
 - 농산물절임, 토마토 가공품, 잼 류, 건조버섯
- 수산물가공품
 - 성게 가공품, 성게무침, 건조 미역, 염장 미역, 가츠오부시, 조림, 말린 생선류, 장어 가공품
- 조미료
 - 드레싱, 드레싱타입의 조미료, 식초, 풍미조미료, 말린 해초 스프, 우스터 소스류, 간장, 장류, 면 간장류
- 유지 또는 유지 가공품
 - 식용식물유지, 마가린류
- 그 밖에
 - 레토르트파우치 식품, 야채냉동식품, 냉장 만두류, 조리냉동식품
- 개별 가공식품으로 원료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되어 있음
 - 야채 냉동식품, 농산물 절임, 장어 가공품, 가츠오부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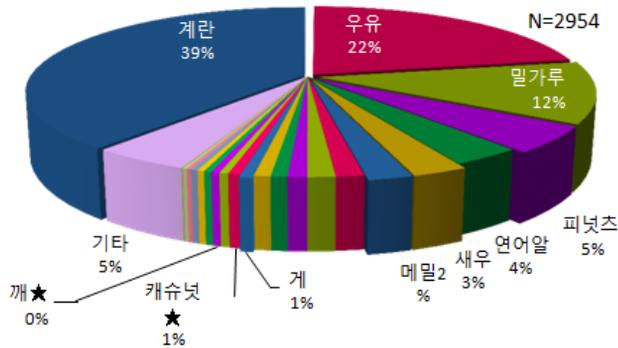
제3절 알레르기 표시

□ 식품을 섭취할 때, 인체가 식물에 포함된 단백질을 이물질로 인식하여, 방어하려고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경우를 식물 알레르기라고 한다.

특정 알레르기 체질을 가진 소비자의 건강 위해를 방지하는 관점에서 과거 건강 유해등의 정도 빈도를 고려해 가공식품의 용기 포장에 특정원재료의 사용 사실 표기가 의무화 되어 있다.

○ 주요 식물 알레르기 증상

- 가벼운 증상 : 간지럼증, 입술 및 눈꺼풀 부어오름, 구토, 천명
- 무거운 증상 : 의식장애, 혈압저하 등의 쇼크



[즉시반응 알레르기에 의한 건강피해 전국실태조사]

출처 : 소비자청, 2012년 식품표시에 관한 시험조사등의 실시

□ 특정원재료 표기

표시 의무	특정 원재료 명칭	이유
표시 의무	계란, 우유, 밀가루, 땅콩, 새우, 메밀, 계	발병 증상수 혹은 증상을 감안하여 표시할 필요성이 높은 것들
표시 장려 (임의표시)	연어알, 키위, 호두, 대두, 바나나, 마, 캐슈넛, 복숭아, 깨, 고등어, 연어, 오징어, 닭고기, 사과, 송이버섯, 전복, 오렌지, 소고기, 젤라틴, 돼지고기	발병수와 증상이 심한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특정원재료에 비해, 적거나 특정원재료로 지정 유. 무 대해서는 차후 계속 조사가 필요.

* 특정원재료의 명칭은 2011~2012년 전국 실태조사 발병수 순위로 기재

○ 원칙적으로 개별표시

(표시에)

원재료명	준초코렛(팜유(대두포함), 설탕, 전지분유, 코코아파우더, 유당, 카카오마스, 식염), 밀가루, 쇼트닝(소고기포함), 설탕, 계란, 콘시럽, 우유 또는 유제품을 주원료로 하는 식품, 포도당, 맥아당, 가공유지, 카라멜시럽, 식염
첨가물	소르비톨, 주청, 유화제, 팽창제, 향료

* 알레르기 유발 성분은 밑줄친 부분

□ 특정가공식품 및 해당 확대 표기 폐지

특정가공식품이란 특정원재료명 또는 대체표기를 포함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특정 원재료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특정가공식품의 예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란의 특정가공식품
 마요네즈 ● 보리 특정 가공식품
 빵 | ⇒ | 신제도에서는 이들 제품에 대해서도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
|---|---|--|

일괄 표시 하는 경우

원재료명	준초코렛(팜유, 설탕, 전지분유, 코코아파우더, 유당, 카카오마스, 식염), 밀가루, 쇼트닝, 설탕, 란, 콘시럽, 우유 또는 유제품을 주원료로 하는 식품, 포도당, 맥아당, 가공유지, 카라멜시럽, 식염, (일부 소맥, 란, 유성분, 소고기, 대두를 포함)
첨가물	소르비톨, 주정, 유화제, 팽창제, 향료, (일부 대두, 유성분을 포함)

* 알레르기 유발 성분 밑줄친 부분

컨타미네이션(오염)

원재료로서 특정원재료등을 사용하지 않는 식품을 제조할 경우에도 제조공정상의 문제등으로 인해 컨타미네이션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다른 제품의 특정원재료가 제조라인상에 혼합하지 않도록 충분히 세정하는 등의 대책실시를 철저히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런 철저한 대책을 시행하여도 컨타미네이션(오염)의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주의 환기 표기를 권장하고 있다.

○ 표시예

본 제품 제조공장에서 ●● (특정 원재료등의 명칭) 을 포함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4절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방법은 건강증진법(제31조 2항 1호)에 의거하여 「영양표시기준」을 준수 할 필요가 있음.

기존의 영양표시는 「임의 표시」 규제에 머물러 있으나, 식품 위생법과 JAS법에 정해진 품질 표시기준, 알레르기 물질, 유전자 변형 원재료와 같이 15년 4월 1일부터 일부 의무 표시를 시행하고 있다.

□ 용기포장을 한 가공식품은 열량,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나트륨 등 5섯가지 성분의 표시가 의무화 되었다. 이중 나트륨의 량은 소비자가 알기 쉽게 “식염상당량”으로 바꾸어 표시한다. 나트륨을 첨가하고 있지 않은 식품만 나트륨 함량을 병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식품관련 사업자에 대해서는 영양성분을 반드시 표기토록 의무화 조치를 하고 있다.

- 의무 표기 : 열량,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나트륨(식염상당량)
- 임의(권장) : 포화지방산, 식이섬유
- 임의(기타) : 당류, 당질, 콜레스테롤, 비타민, 미네랄류

□ 영양성분 표시기준

○ 영양 성분의 함유량을 표시할 경우

- ① 1단위 (100g, 100ml, 1식분, 1포장 등) 으로 표시
- ② 열량 Kcal,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또는 당질, 식이섬유) 나트륨의 순으로 표시 (필수 5항목), 그 밖의 영양 성분 (칼슘, 비타민C 등)은 나트륨 다음으로 표시.

○ 영양 성분의 함유량을 강조한 표시의 경우

단백질 식이섬유 등에 대해 「고」 「함유」 등을 표시할 경우와 열량 지방에 대해 「무」 「저」와 같은 표시를 하게 될 경우 기준치가 규정되어 있음. 기준치는 소비자청 웹사이트를 참조.

○ 표시예

영양성분 표시(1봉지당)	
열량	00kcal
단백질	00g
지방	00g
탄수화물	00g
식염상당량	00g

* 다음 사항은 영양성분 표시 생략 가능.

- ① 표시할 수 있는 면적이 협소
- ② 주류
- ③ 영양 공급원으로서의 기여도가 낮은 것
- ④ 단기간내에 원재료가 변경 되는 경우
- ⑤ 소규모사업자가 판매하는 것 등

수입 식품의 경유도 마찬가지로 동 표시 제도에 따라 정해진 표시내용,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절 GMO(유전자 변형식품 표시제도)

- 식품위생법상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않은 유전자 변형(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MO) 식품의 제조, 수입, 판매 등은 금지. 수입 대상의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유전자 변형 성분이 일본에서 인가된 것에 한하여 식품 표시가 가능
- 유전자 변형식품의 안전성 심사
 - 안전성 심사는 식품위생법(2001년 4월 규격기준개정)에 의해 의무화되어 식품 안전기본법(2003년 7월 실행)에 의한 내각부 식품 안전 위원회 (유전자변형 식품 등 전문조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루어 짐
 - 안전성 심사 절차를 거친 유전자조작 식품 또는 첨가물 일람은 후생노동성의 웹사이트에서 참조가 가능. 현재 1-1에 기재된 감자와 대두 등 8종류 (254품종)의 식품과, α-아밀라제, 키모신, 프루라나제, 리파제, 리보플라빈, 글루코아밀라제, α-글루코시루트란스페라제의 7종 (16품목)의 첨가물이 인가. (2013년 7월 19일 현재) 상세 내용은 후생노동성의 웹사이트 「안전성 심사의 수속을 끝낸 부분의 공표가 된 유전자 변형식품 또는 첨가물 일람」을 참조
 - 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유전자 변형 식품이 시장에 출하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는 폐기, 회수명령 (수입자의 경우에는 환송 명령)등의 행정 처분 또는 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엔 이하의 벌금)

○ 식품 표시법

- 기존의 식품표시에 대하여 이하 3개의 법률이 정해져 있었으나, 2013년 6월 28일 식품표시법이 공포되었고 현재 시행을 하고 있다.

○ 농림물자의 기획과 또는 품질 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JAS법)

- 식품을 수입판매 할 경우는, 원칙으로 JAS법에 의거하여 품질 표시 기준에 따라 일괄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특히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해서는 「유전자 변형에 관한 품질 표시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변형된 DNA 농산물 사용이 원재료의 5%이상을 차지할 경우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음. 또한 이러한 농산물 또는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유전자 변형 하지 않음」과 같은 표시 불가

〈대상 품목〉

- ① 일본에서 이미 식품 안전성 심사를 거친 유전자변형 작물이 존재하며, 이하 8종류의 농산물이 그에 해당됨

- 대두 (팻콩 또는 대두의 콩나물 포함)
- 옥수수
- 감자
- 유채
- 목화
- 알팔파
- 사탕무
- 파파야

- ② 상기 1을 원재료로 가공 및 공정 후에 변형 DNA 또는 이것에 의해 생긴 단백질이 남아있는 33종류의 가공식품군은 이하와 같음

- (1) 두부·유부 종류 (2) 냉동두부, 비지, 유바 (3) 낫토 (4) 두유류 (5) 된장 (6) 대두조림 (7) 대두 통조림·병조림 (8) 콩고물 (9) 볶음 대두 (10) (1)~(9)를 주요 원재료로 한 것. (11) 조리용 대두를 주요 원재료로 한 것. (12) 대두 가루를 주요 원재료로 한 것 (13) 대두 단백을 주요 원재료로 한 것. (14) 팻콩을 주요 원재료로 한 것 (15) 대두 콩나물을 주요 원재료로 한 것.

것. (16) 콘 스낵 과자 (17) 옥수수 전분 가루 (18) 팝콘 (19) 냉동 옥수수 (20) 옥수수 통조림, 병조림, (21) 콘 플라워를 주요 원재료로 한 것 (22) 콘 그리츠를 주요 원재료로 한 것. (23) 조리용 옥수수를 주요 원재료로 한 것. (24) (16)~(20)을 주요 원재료로 한 것. (25) 냉동 감자 (26) 건조 감자 (27) 감자전분 (28) 감자 스낵 과자 (29) (25)~(28)을 주요 원재료로 한 것. (30) 조리용 감자를 주요 원재료로 한 것. (31) 알팔파를 주요 원재료로 한 것. (32) 조리용 사탕무를 주요 원재료로 한 것. (33) 파파야를 주요 원재료로 한 것

○ 카르타헤나법

(유전자 변형 생물 등의 사용 규제에 따른 생물 다양성 확보에 관한 법률)

- 동 법에서는 유전자 변형 생물사용을, 1. 일반 논 밭 재배 및 식품원료로써 유통과 같이 「환경적 확산에 대한 방지 없이 사용 (제 1종 사용 등)」 2. 시험실내의 연구와 같이 「환경에 확산되는 것에 대해 방지 의도를 가지고 사용 (제 2종 사용 등)」으로 구분하고 그 사용을 규제

○ 제 1종 사용 등

- 「제 1종 사용 등」을 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변형 생물 종류 (농작물의 경우 품종에 해당)에 제 1종 사용규정(사용내용 등)을 정하고 생물 다양성 영향 평가서를 첨부하여 담당 기관에 신청,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음. 그러나 이미 일본에서 승인을 받은 유전자 변형 생물을 사용할 경우 재 승인을 필요없음

○ 제2종 사용 등

- 「제 2종 사용 등」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확산 방지 조치가 기관에서 정해져 있는 경우는 해당 조치를, 기관에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는 담당 기관에 신청하고 확인을 받은 후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료로써의 GMO 규제는 「사료 안전법」(사료의 안전성을 확보 또는 품질의 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6절 식품 첨가물

- 원칙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모든 첨가물이 표시 의무 대상이 됨. 식품 위생법에 사람의 건강을 해칠 위험이 없는 첨가물 리스트를 규정. (시행규칙별 표 제 1 (제 12조 관련))
- 식품첨가물이란
 - 동 시설규칙별표 제 1수장의 지정첨가물 (안전성을 평가한 위에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한 것 436품목)
 - 기존 첨가물 (일본국내의 이미 사용되어지고 장기간 쓰여진 것으로, 예외적으로 지정 받지 않고 사용 판매가 가능한 것. 치자색소, 감 탄닌 등 365품목)
 - 천연향료 (동식물유래의 물질이 식품에 향을 첨가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어 지는 것. 바닐라향료, 계 향료등 약 600품목)
 - 일반적인 음식 첨가물로 사용되는 것들 (딸기 주스, 한천 등 약 100품목)
[주의] 품목 수는 2013년 8월 현재 기준
특히 지정첨가물과 기존첨가물은 포지티브 리스트 식품 식품첨가물으로써, 이 리스트에 기재되지 않은 첨가물의 사용은 인정하지 않음
- 식품첨가물의 표시
 - 용기포장에 들어있는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용기포장에 눈에 띄는 곳에, 사용한 모든 첨가물명을 기재할 필요가 있음. JAS법에는 일괄표시의 원재료란에 식품첨가물 이외의 원재료와 식품첨가물을 구분하여 중량의 배합이 많은 순으로, 사용된 모든 원재료를 기재해야함.
 - ① 물질명을 표시
 - 식품첨가물은 원칙적으로 각각의 물질 명을 표시
 - 단, 첨가물의 화학명은 일반적으로 익숙하지 않고, 알기 힘든 경우가 있음
예를 들면 비타민C의 화학물질명은 「L-아스코빌산」이지만, 비타민C라고 기재하는 것이 소비자들이 더 알기 쉬움

- 그렇기 때문에 첨가물의 품명 (명칭 또는 다른 이름) 간략명 또는 종류명을 정하고 첨가물을 표시할 경우에는 이것들의 이름을 사용. 이 리스트는 식품위생법 실시 규칙 「별표 제1」 「기존 첨가물 명부」 또는 「식품위생법에 의거한 첨가물의 표시등에 대해 (2012년 10월 소신표 제 377호 소비자청 차장 통지)」로 확인 할 수 있음

(예) 화학물질명 L-아스콜빈산 (간략명; 아스콜빈산, V.C)

② 용도명을 병기

- 보존료와 감미료 등 다음 8종류의 용도에 사용되어지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에 유용한 정보로써, 물질명과 더불어 그 용도 명을 함께 표시. (식품위생법 제 19조 제 1항의 규정에 의거한 표시 기준에 관한 2011년 8월 31일 내각부령 별표 제 2 (제 1조, 제 11조, 제12조 관계))

※ 용도명을 병기할 첨가물

감미료, 착색료, 보존료, 증점제, 안정제, 젤화제, 또는 점료, 산화방지제, 발색제, 표백제, 곰팡이방지제 또는 방부제

예) 감미료 (키시리톨)

착색료 (치자색소)

③ 일괄명으로 표시

- 다음 14종류의 용도에 사용될 경우에는 물질명 대신 사용되는 목적을 나타낼 일괄명으로 표시할 것이 인정되어 있음. (식품위생법 제 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한 표시 기준에 관한 2013년 8월31일 내각부령 별표 제5 (제 11조 관계))
- 예를 들면 미량의 물질을 조합 하여 만드는 식품용 향료는 배합한 물질 모두를 표시하는 것 보다 일괄로 「향료」라고 표시하는 편이 더 알기 쉬움
- 일괄명으로 표시하는 용도

이스트푸드, 껌 베이스, 알카리 염수용체, 효소, 광택제, 향료, 산미료, 연화제, 조미료, 두부용 응고제, 고미료, 유화제, pH조정제, 팽창제

예) 「구연산」 → 「산미료」

「카페인」 → 「고미료」

「레시친」 → 「유화제」

④ 표시 생략

- 영양 강화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첨가물 또는 가공조제, 캐리오버에 해당하는 첨가물은 표시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음

제7절 보건기능식품

- 일정 조건에 달하는 건강식품은 보건기능식품이라고 표시함 (건강증진법)
단, 식품 위생법과 JAS법에 정해진 품질표시기준과 알레르기 물질 표시 유전자 변형 원재료 등의 판매표시 의무와는 다름. 보건기능식품 표시제도는 임의표시로 수입자가 국내 판매시 표시를 희망하는 경우 법령으로 정해진 규격 기준에 적합 할 것, 또는 나라의 심사 절차가 요구됨
- 식품은 크게 기능성을 표시할 수 없는 일반식품과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보건기능식품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일반 시중에서 영양보조식품, 건강보조식품, 영양조정식품이라고 표시되어 판매되고 있는 제품은 일반식품에 해당한다. 일반보건용식품 및 영양기능식품 이외의 식품에는 식품이 가지고 있는 효과와 기능을 표시할 수가 없다.
또, 의약품 승인을 받지 않고, 그 효능 효과등에 관한 표시는 “약사법”에 의해 공정한 경쟁 또는 일반소비자의 이익을 저해 할 우려가 인정되어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

1. 특정보건용식품

- 「특정보건용식품(조건부 특정보건용식품을 포함)」은 건강증진법에 의거하여 특별용도식품의 하나로 「신체의 생리학적기능과 생물학적 활동에 관여하는 특정보건기능이 있는 성분을 섭취하므로 건강유지 및 증진에 도움이 되고 특정보건용도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식품」이다.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제품별로 식품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해서 심사를 받고, 표시를 위해 소비자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특정보건용식품 및 조건부 특정보건용식품에는 허가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 해외 공적기관에 의해 건강효과 표시가 인정된 식품이라도 일본에서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특정보건용식품」이라고 표시 할 수 없다.
- 특정보건용식품 분류
 - ① 특정보건용식품 : 통칭 토쿠호 (예) 체지방이 신경 쓰는 분들에게 등)
 - ② 질병 리스크 저감 표시 : 특히 갈슘(골다공증) 과 엽산(신경관 폐쇄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날 위험) 에 대해서 표시 할 경우
 - ③ 규격 기준형 : 특히 식이섬유와 올리고당에 대해 표시 (예) 장 상태를 좋게 해 줌 등)
 - ④ 조건이 붙는 특정보건용식품 : 특정보건용식품의 레벨까지는 아니지만 일정의

유호성이 확인된 경우 (예)「○○를 포함하여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 ~에 적합할 가능성이 있는 식품입니다」 등)

신청 절차는 이하 3곳에서 이루어짐.

○ 보건소 (표시허가신청)

- 「표시허가 신청서」를 주로 영업소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 보건소에서 각 도도부현을 거쳐 소비자청에 전달. 기재내용은 이하와 같음

- ① 신청자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법인의 경우, 명칭, 사무실소재지, 대표자 이름, 설립일자)
- ② 영업소의 명칭, 소재지 (제조소)
- ③ 상품명
- ④ 유통기한 또는 상미기한
- ⑤ 내용량
- ⑥ 허가를 받고자 하는 이유 및 해당식품이 국민 식생활 개선에 어떻게 기여하고 그 섭취가 국민 건강 유지 및 증진을 도모하는 이유
- ⑦ 허가를 받고자 하는 표시의 내용
- ⑧ 원재료의 배합
- ⑨ 제조 방법
- ⑩ 영양성분량, 열량
- ⑪ 1일 섭취기준량
- ⑫ 섭취상의 주의사항
- ⑬ 주의사항(섭취, 조리, 보존방법에 관해, 특히 주의를 필요로 하는 것)
- ⑭ 기타, 유통기한의 표시방법, 제조소 소재지 또는 제조자의 표시방법, 신청 구분, 담당자이름, 연락처 등

○ 소비자청 식품 표시과 (심사신청)

- 보건소로 신청 후 「심사신청서」에 I. 의 「표시허가신청서」의 복사본과 함께 이하 서류를 구비하여 소비자청 식품표시과로 제출. 제출서류는 이하와 같음

- ① 신청자의 생년월일 (법인의 경우 설립)
- ② 표시견본
- ③ 식품이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며 섭취를 통해 국민 건강의 유지 및 증진에 도모하는 이유, 1일 섭취기준량 또는 섭취상의 주의사항
- ④ 보건의 용도 등, 각 항목별에 사용하는 문헌 등의 요약
- ⑤ 보건의 용도 등, 각 항목별로 사용하는 문헌 등의 일람
- ⑥ 영양 성분량 또는 열량의 시험검사 성적서
- ⑦ 식품중의 특정 보건목적이 되는 영양성분의 정량시험의 시험검사의 성적서, 시험검사의 방법을 기재한 자료
- ⑧ 품질관리에 관한 자료
- ⑨ (첨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료가 있는 경우) 자료의 첨부가 필요하지 않은 합리적인 이유
- ⑩ 보험용도, 안전성 등 각 항목별 사용한 문헌 등 (유효성, 1일당 섭취기준량, 안전성, 관여성분의 물리적, 과학적, 생물학적성상등을 명확하게 한 자료)

○ 국립건강, 영양연구소 (또는 등록시험기관) (분석의뢰)

- 허가시험은 국립건강 영양연구소 또는 나라의 등록을 받은 시험기관이 실시. 상기 절차와 마찬가지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식품의 분석용 샘플에 「표시허가 신청서」와 「심사신청서」의 복사본을 구비하여 분석을 의뢰하고, 「분석결과(시험성적서)」를 입수. 분석결과는 소비자청에 제출
- 소비자청은 소비자위원회, 식품안전 위원회, 후생노동성에 자문 또는 의견 조회를 하여 심사 후 문제가 없으면 소비자청 장관에 의한 허가서가 각 도도부현으로부터 보건소를 통해 교부. 표시할 때에는 허가 내용과 같이 정해져 있는 방법대로 표시하는 것이 의무

2. 특별용도식품



- 특별용도표시 허가
 - 특별용도식품에는 환자용 식품, 임산부 및 수유용 분유, 유아용 조제분유, 음식 섭취 곤란자를 위한 양호 식품이 있음. 허가 기준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나라가 적합성을 심사하고, 허가 기준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평가를 진행. 특정 보건용 식품도 분류상은 특별용도 식품 중에 하나이지만 건강식품으로써는 특정 보건용 식품은 특별용도식품과 구별하여 취급됨.
- 특별용도 표시를 한 식품의 수입허가
 - 특별용도식품과 특정보건용 식품은 나라의 허가 및 승인을 받지 않고는 표시된 물건의 수입이 불가능. (건강증진법 제30조) 승인 없이 수입하려고 할 경우 법적 처벌이 있음.
- 허가사례
 - 상품명: 빈스타쿠 펙디에뜨
 - 알레르기 유발물질제거 식품 무유당식품
 - 허가 표시내용 : 우유 알레르기 환자, 유당불내증 및 갈락토스 혈증 유아에게 사용하는 우유입니다.

3. 영양기능식품

- 부족하기 쉬운 영양성분(비타민, 미네랄)의 보충을 위한 식품으로 영양성분의 기능을 표시한 식품으로서 1일당 섭취 기준량을 포함한 비타민류 12종, 미네랄류 5종이 국가에서 정한 상.하한치의 범위 이내의 식품을 말한다. 건강증진법 제31조의 의하여 정해진 표시 기준 규격에 적합하면 허가신청과 신고등은 불필요하다.
- 대상품목
시행 당시 드링크와 아이들용 과자가 대상이었으나, 이후 스테플, 유제품, 디저트, 스낵, 농산가공품, 축산가공품, 수산가공품, 통조림, 조미식품, 조미료, 분유 등 대상 품목은 다양하다.
- 표시 유의사항
법령으로 정해진 표시 의무사항 및 표시 금지사항을 특히 주의 할 필요가 있다.
 - * 기준규격에 정해져 있지 않은 성분의 기능 표시와 특정보건용도의 표시
예) 다이어트가 됩니다. 눈이 피곤하신 분들에게.. (×)
 - * 소비자청장이 개별로 심사등을 하고 있는 등의 오해 소지의 문구
예)소비자청장장관 인정규격 기준적합 (×)
 - * 「영양기능식품(비타민C)」 등, 영양기능표시를 하는 영양성분의 명칭을 그대로 상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 (×)
- 과대표시 및 오인 할 만한 표시의 금지
 - 광고에서 사실과 상이한 표시 또는 오인 될 만한 표시는 금지. (제 32조 2항)
또한 기본적으로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만한 과대 허위 표시는 금지되어 있음.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경품 표시법)) 마찬가지로 효능 효과를 외치는 의약품과 오인이 될 만한 표시는 금지되어 있음. (약사법)

4. 기능성표시식품

- 지금까지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식품은 개별 허가를 받은 「특정보건용식품(토쿠호)」와 기준규격에 합격을 받은 「영양기능식품」에 한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기능성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늘렸다. 사업자의 책임하에 식품의 안정성과 기능성에 관한 화학적 근거에 따라 판매전에 소비자청장에게 제출해야 표시가 가능하다.
- 개시일 : 2015. 4. 1. (법률공포 실시)
- 대상 : 신선식품을 포함한 모든 식품
 - 단, 특별용도식품, 영양기능식품, 알코올 포함하는 음료, 나트륨, 당분등을 과잉 섭취시키는 식품은 제외
 - 신제도에 의해 기능성을 표시하는 경우, 식품표시법에 근거하여 식품표시기준과 “기능성표시식품의 신고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신고와 용기포장 표시를 할 필요가 있다.
- 해당 식품에 관한 표시내용, 식품관련 사업자명 및 연락처등의 식품관련사업자에 관한 기본정보, 안전성 및 기능성의 근거(소비자청 웹사이트에 공개)에 관한 정보, 생산,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 건강피해 정보수집태세 기타 필요한 사항을 판매개시일 60일전까지 소비자청에 신고하여야 함.
- 의무 표시사항
 - 기능성 표시 식품임을 알리는 문구
- 표시사례
 - “장내 상태를 좋게 합니다.” “지방의 흡수를 낮춰줍니다.” 등

기능성 표시식품
신고번호 △△

●●●(상품명)

〈신고번호〉
본제품은 ◇◇을 함유하고 있어 □□기능이 있습니다.

본제품은 사업자의 책임하에 특정보건의 목적이 기대되는 것을 표시한 것으로서 소비자청장관에게 신고 된 것임. 단, 특정보건용식품과 달리 소비자청장관에 의한 개별 심사를 받은 것은 아님.

○ 표시사항

- 과학적근거를 가지는 기능성 관여 성분 및 해당성분 또는 해당성분을 함유하는 식품이 가지고 있는 기능성
- 1일당 섭취기준량
- 1일당 섭취기준량당 영양성분량 및 열량
- 1일당 섭취기준량당 기능성관여 성분 함유량
- 소비자청 신고 번호
- 식품관련 사업자 연락처(전화번호)
- 기능성 및 안정성에 대해서 정부에 의한 평가를 받지 않는다는 문구
- 섭취방법
- 섭취시 주의사항
- 균형있는 식생활 보급 계몽을 도모하는 문구
- 조리 또는 보존방법과 관련하여 특히 주의를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주의 사항
- 질병진단, 치료, 예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설명
- 질병에 걸린 사람, 미성년, 임산부(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 포함) 및 수유자에 대한 기능성 소구가 아니라는 점 (단, 신선식품은 제외)
- 질병환자는 의사,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은 의사 및 약제사에 상담한 후

- 에 섭취하여야 한다는 문구
- 컨디션에 이상을 느낀 경우에는 지체없이 섭취를 중지하고 의사에게 상담토록 하는 문구

제5장 통관보류·억류등 부적합 사례

□ 2015년 월별 통관보류 및 검역 불합격 사례(1~12월)

- 총 36건 (농식품·농산가공 : 15건, 수산식품 21건)
- 라벨 및 포장 불합격(0건), 기준치 초과(36건)

월	품목명	부적합내용	수입자 명	조치상황
1월	짬뽕어 슬라이스 (생식용 냉동회)	성분규격 부적합(대장균군 양성)	(주)진미식품	자주검사 (전량폐기)
	신선 청고추	홀킨코나졸 기준치 초과 (분석결과: 0.09 ppm 검출)	-	전량판매완료
	신선 청고추	홀킨코나졸 기준치 초과 (분석결과: 0.08 ppm 검출)	-	전량판매완료
2월	토마토 (신선 대과)	잔류농약 위반 플르퀸코나졸 0.02PPM	(주)마루모토	모니터링검사에 의한 선통관조치로 전량 판매 완료
	토마토 (신선 대과)	잔류농약 위반 플르퀸코나졸 0.04PPM	(주)양카	모니터링검사에 의한 선통관조치로 전량 판매 완료
	미네랄워터 (살균생수)	성분규격 부적합(대장균군 양성)	(주)SEIK CORPORATION	모니터링 검사 (폐기)
3월	삼치 (필레)	성분규격 부적합(대장균군 양성)	오릭스(주)	자주검사 (전량 폐기)
	레토르트식품 (추어탕)	성분규격 부적합(대장균군 양성)	(주)스미다상사	모니터링검사 (일부판매, 잔량은 폐기)
5월	토마토 (신선 대과)	잔류농약 위반(플루퀸코나졸)	(주)릭쿠스타드	전량보관중으로 폐기 또는 반송
	대추차(분말음료)	성분규격부적합(대장균군 양성)	(유)티엠케이상사	전량보관중으로 폐기 또는 반송
	활전복	쿠도아충 발생(식중독 사례)	-	소비

월	품목명	부적합내용	수입자 명	조치상황
6월	냉동 삶은 굴	성분규격부적합(세균수 3.6×10^6 /g)	-	폐기, 반송
	냉동 납치 살	성분규격부적합(대장균군 양성)	-	폐기, 반송
7월	붕장어 (무기열섭취냉동식품)	성분규격 부적합(대장균군 양성)	(유)이케소수산	폐기 또는 반송지시
	꽃감조각 (무기열섭취냉동식품)	성분규격부적합(세균수 1.3×10^5 /g)	(주)히토시나상사	전량보관중으로 폐기 또는 반송
	요구르트아이스크림 파우더	사용기준부적합 (폴리슬리베이트80 0.183g/kg 검출)	(주)키토스상사	전량보관중으로 폐기 또는 반송
	구운붕장어 (무기열섭취냉동식품)	성분규격 부적합(대장균군 양성)	(주)다카기수산	전량보관중으로 폐기 또는 반송
	게 (무기열섭취냉동식품)	성분규격부적합(세균수 2.5×10^5 /g)	도모타세일링 (주)	전량보관중으로 폐기 또는 반송
	구운붕장어 (무기열섭취냉동식품)	성분규격부적합(세균수 4.1×10^6 /g 대장균군 양성)	(주)다카기수산	전량보관중으로 폐기 또는 반송
	구운붕장어 (무기열섭취냉동식품)	성분규격 부적합(대장균군 양성)	(주)다카기수산	전량보관중으로 폐기 또는 반송
	왕게가공품 (무기열섭취냉동식품)	성분규격부적합(세균수 9.4×10^5 /g)	(주)쿄스이	전량보관중으로 폐기 또는 반송
	왕게가공품 (무기열섭취냉동식품)	성분규격 부적합(대장균군 양성)	(주)우에노수산	전량보관중으로 폐기 또는 반송
8월	냉동 양식 납치	쿠도아충 1.7×10^6 개/g 검출	키요가와상사 (유)	폐기 및 반송조치
	살고 익힌 냉동 장어	성분규격 부적합(대장균군 양성)	(주)다카기 수산	폐기 및 반송조치 (전량보관)

월	품목명	부적합내용	수입자 명	조치상황
9월	냉동나물 (무가열섭취)	성분규격 부적합(대장균군 양성)	넷츠후즈(주)	폐기 또는 반송 (전량보관)
	명란젓	폴리솔리베이트 사용량 위반 및 아초산나트륨, 솔빈산 칼륨 대상의 사용	케이 앤 티	폐기 또는 반송 (전량보관)
	대과토마토	잔류농약 플루퀸코나졸 0.03PPM 검출	마루모토	폐기 또는 반송 (전량보관)
	대과토마토	잔류농약 플루퀸코나졸 0.04PPM 검출	난큐	폐기 또는 반송 (전량보관)
	카라긴 (바닷말 추출 다당류)	미생물 한도 초과 세균검출 2.4×10 ⁴	아사히	폐기 또는 반송 (전량보관)
10월	냉동 삶은 게살	성분규격부적합(세균수 5.0×10 ⁵ /g)	-	성분규격부적합(세 균수 5.0×10 ⁵ /g)
	냉동 가자미	성분규격부적합 (대장균 군 양성)	-	성분규격부적합 (대장균 군 양성)
11월	고춧가루	사용기준부적합 (디페노코나졸 0.05 ppm 검출)	-	폐기, 반송 등 지시(전량보관)
	냉동 붉은 대게	성분규격부적합(대장균 양성)	-	폐기, 반송 등 지시(전량보관)
12월	건강식품	사용기준부적합 (스테로일 젖산 나트륨 0.9g/kg 검출)	-	폐기
	창란젓	사용기준부적합 (폴리솔리베이트 0.043 g/kg檢出)	-	반송
	냉동 데친 봉장어	성분규격부적합(대장균 군 양성)	-	폐기, 반송 등 지시(전량보관)

※ 후생노동성 위반사례 웹사이트

(http://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enkou_iryuu/shokuhin/yunyu_kanshi/ihan/index.html)

□ 사례 분석

○ 냉동식품 및 생수

- 모든 수입식품의 경우, 대장균군은 음성이어야 하며, 특히 냉동식품의 경우 대장균군에 대해서 모니터링검사에 자주 적발되므로 해당제조시설 위생 및 수질 검사를 철저히 해야함
-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2015년판 수입식품감시지도계획에 의하면 금년도 중점 감시항목의 하나로 가공식품에 대한 성분규격(대장균군 등)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할 예정으로 있어 특히 주의가 요구됨

○ 신선토마토

- 잔류농약인 플루퀸코나졸이 위반되어 2015.2.18일자로 한국산 대과 토마토에 대해서는 일본 도착시 전수검사가 발동된 상태임으로 동 성분에 대한 국내 생산 단계 사전 검사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시 됨
- 대과토마토에 대한 전수검사 면제를 위해 현재 국내 수출업체 ID 등록제도 추진 준비중에 있으나 제도도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일본도착시 지정검사기관에서 검사합격후 통관이 가능함

○ 대추차(분말음료)

- 모든 수입식품의 경우, 대장균군은 음성이어야 하며, 대장균군의 모니터링검사 결과 적발이 증가하고 있어, 해당제조시설 위생 및 수질검사 철저필요

○ 활넙치

- 한국산 활넙치 수출업체는 아이디 등록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금번 일본내에서 발생한 식중독사례를 역학추적한 결과, 동 양식장의 제품에서 쿠도아충이 판명된 사안으로 평상시 양식장 위생관리 및 쿠도아충 검사등의 사전검사등의 예방조치가 필요함

○ 냉동자숙굴

- 냉동자숙굴의 일정온도에서 스팀으로 열처리하나 가열처리 단계에서의 관리부족으로 추정되는 세균수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사안임

※ 굴제품의 일반세균 기준치

- 동결직전가열 냉동굴 제품 기준치 : 100,000/g이하
- 동결직전가열 냉동굴 이외 제품 기준치 : 3,000,000/g이하
- 생굴제품 기준치 : 50,000/g 이하

○ 생식용 냉동 광어(필레)

- 생식용 냉동어패류의 대장균군은 음성이어야 하며, 해당제조시설 위생 및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야함

○ 요구르트 파우더제품

- 폴리솔리베이트 80의 사용기준치는 기타식품으로 분류되어 0.020g/kg이내임으로 수출전 일본의 기준치를 파악하여 기준치 이내 사용토록 주의하여야 함.

○ 명란젓

- 고추장에 사용되어지는 폴리솔리베이트 및 솔빈산칼륨은 일본 수출품에는 사용해서는 안될 첨가제임. 한국산 된장, 고추장류의 경우 일본 식품기준법상 된장류로 분류되지 않아 솔빈산칼륨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

제6장 수출현안

□ 가공식품사전등록(확인)제도 확대도입 관련 진행사항

- 일본식품위생법(후생성 고지 제 119호)에 따른 가공식품의 일본 수입절차 간소화를 위한 품목사전등록제도를 금년에도 계속 확대 시행
 - 일본 수입가공식품 사전확인제도의 확대운용을 위한 제도설명회가 aT 본사에서 개최되었으며 설명회에는 도쿄지사 담당자, 농림축산식품부, 식약처 등 관계기관 참석
- 한국식품은 현재 김치등 16업체, 156품목이 등록되어 있으며, 동제도 활용시 식품정기의무검사 주기 완화(1년→3년) 및 통관시간 단축 등의 효과 기대 됨

일본 수입가공식품 사전확인제도

일본식품위생법(후생성고지 제119호)에 의거, 일본의 식품제조기준 및 규격에 적합함이 확인된 수입가공식품을 후생노동성에 사전에 등록하고, 수입업자가 수입시 등록번호가 기재된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본 일선통관검역소에서 신속하게 수입식품반출서를 교부하는 제도임

- 시사점
 - aT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협력을 통해 국내 수출업체의 관련 제도 이용을 위한 제반 지원을 실시할 예정으로, 이를 통한 한국산 가공식품 수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한국내 배나무 화상병 발생으로 인한 과실류 수입정지 조치

- 일본 농림수산성은 한국내 배나무에서 화상병이 발생함으로써 화상병균의 일본내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으로 부터의 화상병 숙주식물(과실류 포함)의 수입 정지조치함(2015.6.1.자)

- 동 식물방역조치는 식물검역상의 중요한 긴급 안전중의 하나로 향후 해당 한국산 과실류의 대일 수출금지 조치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짐
- 대일 수출 금지 해당 품목은 모과, 비파, 사과, 배(서양배 포함), 아로니아등임

2015년 식품위반 사례중 수산물 세균검출이 큰 비중 차지

- 2015년1월-10월까지 한국산 위반사례를 보면 총28건중 수산물이 18건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대장균군등 미생물 검출 위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여름철 세균위반 사례가 많아 각별한 제조작업장내 위생환경 철저등 주의가 필요시 됨

대과 토마토 잔류농약 위반관련 전수검사 계속

- 한국산 대과토마토는 현재 잔류농약인 플루퀸코나졸 성분에 대해 전수검사 상태로 매회 통관시 마다 검사후 합격시에 한해 통관이 가능한 상태임
- 현재 일본정부에 대과토마토 우량수출업체에 대해 검사면제 아이디어입을 신청한 상태이나 검토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으로 빠른 조치가 기대됨



[자료출처, 관련법류 명시 및 URL공유]

- 통관업자에게 수출 통관을 의뢰 할 때 필요한 서류
http://www.jetro.go.jp/world/japan/qa/export_03/04A-010812
- 통관 법
<http://law.e-gov.go.jp/htmldata/S42/S42HO122.html>
- 통관 법 시행령
<http://law.e-gov.go.jp/htmldata/S42/S42SE237.html>
- 관세법
<http://www.houko.com/00/01/S29/061.HTM>
- 관세의 구조
http://www.customs.go.jp/shiryo/kanzei_shikumi.htm
- 관세 분류 (사전 고시 제도)
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202_jr.htm
- 수입 관세 절차의 개요
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101_jr.htm
- 관세 할당
http://www.maff.go.jp/j/kokusai/boueki/triff/t_kanwari/index.html
- 일본 통관 연합회
<http://www.tsukangyo.or.jp/>
- 세관 : 세관 수속이나 세번 세율에 관한 문의
<http://www.customs.go.jp/question2.htm>
- 동물검역소
<http://www.maff.go.jp/aqs/>
- 동물검역소 (수입금지품목)
<http://www.maff.go.jp/aqs/hou/43.html>

- 식물방역소
<http://www.maff.go.jp/pps/j/introduction/import/>
- 외래생물법에 의한 수입 규제
<http://www.env.go.jp/nature/intro/3breed/yunyu.html>
- 식품 등의 수입 신고 절차의 흐름
http://www1.mhlw.go.jp/topics/ysk_13/tp0419-1b.html
- 식품 위생법에 근거한 수입 절차 (검역소)
<http://www.mhlw.go.jp/topics/yunyu/tp0130-1a.html>
<http://www.jetro.go.jp/world/japan/regulations/>
- 식품 첨가물
http://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enkou_iryuu/shokuhin/syokuten/index.html
- 식품 위생법에 근거한 식품·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 기준 (발췌)
<http://www.mhlw.go.jp/topics/yunyu/tp0130-1a.html>
- 식품 표시제도 (식품표시과)
<http://www.caa.go.jp/foods/index.html>
- 품질 표시 기준 목록
http://www.caa.go.jp/jas/hyoji/kijun_Itiran.html
- 가공 식품 품질 표시 기준
<http://www.caa.go.jp/foods/pdf/syokuhin870.pdf>
- JAS 법에 근거 가공 식품 품질 표시 기준
http://www.jetro.go.jp/world/japan/qa/importproduct_01/04M-100404
- 식품 표시 일원화 정보
<http://www.caa.go.jp/foods/index18.html>



- 알레르기 물질을 포함한 가공 식품의 표시 핸드북
<http://www.caa.go.jp/foods/index8.html>
- 알레르기 표시
http://www.maff.go.jp/j/fs/f_label/f_processed/allergy.html
http://www.jetro.go.jp/world/japan/qa/import_01/04M-091203
- 건강 기능 식품 표시제도
http://www.jetro.go.jp/world/qa/t_basic/04M-011034
- 특정 보건 용 식품의 인증 신청 절차
http://www.jetro.go.jp/world/japan/qa/importproduct_01/04M-100411
- 유기농 식품의 검사 인증 제도 (표시 규격과)
http://www.maff.go.jp/j/jas/jas_kikaku/yuuki.html
- 유기 등록 인증기관 목록 (표시 규격과)
http://www.maff.go.jp/j/jas/jas_kikaku/yuuki_kikan.html
- 유기 식품 표시 제도에 대해
http://www.jetro.go.jp/world/qa/t_basic/04M-080304
- 부당 경품류 및 부당 표시 방지법 (경품 표시법)
<http://www.caa.go.jp/representation/index.html#m01>
- 농림수산성 : JAS 규격 목록
http://www.maff.go.jp/j/jas/jas_kikaku/kikaku_itiran.html
- 농림수산성 : 식품 표시와 JAS 규격 (표시 규격과)
<http://www.maff.go.jp/j/jas/index.html>
- 일본 식품 화학 연구 진흥 재단 : 잔류 농약 등 포지티브리스트 제도 (식품에 잔류하는 농약, 사료 첨가제 및 동물 용 의약품의 한도 량)
<http://www.ffcr.or.jp/Zaidan/FFCRHOME.nsf/pages/MRLs-n>
<http://www.mhlw.go.jp/houdou/2008/05/h0509-6.html>

- 식물 방역소 (식물 검역에 관한 문의)
<http://www.maff.go.jp/pps/j/guidance/outline/index.html>
- 식물 등 수출 검사 신청서
<http://www.maff.go.jp/pps/j/law/form/form07.html>
- 동물 검역소 : 가축 전염병 예방법
<http://www.maff.go.jp/aqs/hou/36.html>
- 수입 축산물의 검사 절차
<http://www.maff.go.jp/aqs/tetuzuki/product/46.html>
- 검사가 필요한 것 (지정 검역 물 등)
<http://www.maff.go.jp/aqs/hou/37.html>
- 수입 금지 지역과 물건
<http://www.maff.go.jp/aqs/hou/43.html>
- 수입 금지에 대해
<http://www.maff.go.jp/pps/j/introduction/import/ikinshi/>
- 수출 정지 조치 정보
<http://www.maff.go.jp/aqs/topix/teishijoho.html>
- 축산물의 수출입
<http://www.maff.go.jp/aqs/tetuzuki/product/index.html>
- 중국산 닭고기에 대한 검사 명령의 실시에 대해
<http://www.mhlw.go.jp/houdou/2008/05/h0509-6.html>
- 수입 식품에 대한 검사 명령 실시 (중국산 돼지고기 및 그 가공품)
<http://www.mhlw.go.jp/houdou/2009/06/h0622-2.html>
- 농림수산성 : 돼지고기의 차액 관세 제도의 적정한 운용에 대해 (생산 국 축산
 부 육류 계란과)
http://www.maff.go.jp/j/chikusan/shokuniku/lin/l_buta_sagaku/index.html



- 전국 식육 사업 협동조합 연합회
<http://www.ajmic.or.jp/kumiai/hyouji.html>
- 햄·소시지 류 공정 거래위원회
<http://www.niku-kakou.or.jp/kousei/>(소스류)
- 일본 식품 화학 연구 진흥 재단 : 잔류 농약 등 포지티브리스트 제도
<http://www.ffcr.or.jp/Zaidan/FFCRHOME.nsf/pages/MRLs-n>
<http://www.mhlw.go.jp/houdou/2008/05/h0509-6.html>
- 간사이 공항 검역소 : 식품 등 수입 신고서의 기재 방법과 기입 예
<http://www.forth.go.jp/transfer/missing.html>
- 법령 데이터 제공 시스템 (e-Gove) : 건강 증진법
<http://law.e-gov.go.jp/htmldata/H14/H14HO103.html>
- 경제산업성 : 자원 유효 이용 촉진법
http://www.meti.go.jp/policy/recycle/main/admin_info/law/02/faq.html
- 사단 법인 전국 공정 거래위원회 연합회 : 전국 공정 거래위원회 연합회
<http://www.jfftc.org/>
- 용기 포장 리사이클 법
http://www.jetro.go.jp/world/japan/qa/import_01/04M-080305

- 식물방역소 : <http://www.maff.go.jp/pps/j/introduction/import/>
-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식물방역과 : 03-3502-8111(대표)
- 외래생물법(特定外来生物による生態系等に係る被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에 의한 수입 규제
<http://www.env.go.jp/nature/intro/3breed/yunyu.html>

